

발 간 등 록 번 호

11-1790378-100001-10

2024년 법령해석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참 고

○ 개별 결정문 검색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공공기관정보 → 위원회결정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선택

○ 연도별 결정문 모음집 검색 방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pipc.go.kr) → 정책·제도 → 자료실 → 결정문·사례집 → 심의·의결 결정문

목 차

2024년 법령해석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

제2회	(2024. 1. 24.) 제2024-102-002호	서울특별시의 재난관리를 위한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3
제3회	(2024. 2. 14.) 제2024-103-003호	서민금융진흥원의 이해충돌·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건	9
제4회	(2024. 2. 28.) 제2024-101-001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방지 업무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8
제5회	(2024. 3. 13.) 제2024-105-005호	파주시의 성매매방지 홍보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28
제5회	(2024. 3. 13.) 제2024-105-006호	태안군의 피학대동물 격리 조치 등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34
제5회	(2024. 3. 13.) 제2024-105-007호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안전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지자체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39
제6회	(2024. 3. 27.) 제2024-106-008호	김포시의 외국인 아동 입학안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45
제6회	(2024. 3. 27.) 제2024-106-009호	국회 등의 자료제출 요구 관련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52
제7회	(2024. 4. 24.) 제2024-107-010호	원주시의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59
제7회	(2024. 4. 24.) 제2024-107-011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건강검진 미수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66
제8회	(2024. 5. 8.) 제2024-108-012호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환수를 위한 통일부 보유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72
제8회	(2024. 5. 8.) 제2024-108-013호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른 한국마사회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79
제8회	(2024. 5. 8.) 제2024-108-014호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의 형 집행 업무를 위한 우정사업본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87
제9회	(2024. 5. 22.) 제2024-109-015호	경상남도의 자체감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93

제9회	(2024. 5. 22.) 제2024-109-016호	경상남도의 체납차량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도내 시·군 보유 차량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98
제10회	(2024. 6. 12.) 제2024-110-017호	영월교도소의 도주한 수용자 체포를 위한 영월군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104
제10회	(2024. 6. 12.) 제2024-110-018호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폐교대학 교직원 증명 발급 업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09
제11회	(2024. 6. 26.) 제2024-111-019호	범죄 예방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내 모니터 설치 및 CCTV 영상 송출에 관한 건	118
제11회	(2024. 6. 26.) 제2024-111-020호	강릉시의 급수 중단·제한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126
제12회	(2024. 7. 10.) 제2024-112-021호	한전엠씨에스주식회사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한국전력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30
제12회	(2024. 7. 10.) 제2024-112-022호	경기도의 외국인 아동 입학안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38
제13회	(2024. 7. 24.) 제2024-113-023호	함양군의 쓰레기 무단투기자 단속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145
제13회	(2024. 7. 24.) 제2024-113-024호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의 쓰레기 무단투기자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151
제13회	(2024. 7. 24.) 제2024-113-025호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자체감사를 위한 소속 직원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건	160
제13회	(2024. 7. 24.) 제2024-113-026호	춘천시의회 of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춘천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165
제14회	(2024. 8. 28) 제2024-114-027호	속초시의 재난대응 통합관제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172
제14회	(2024. 8. 28.) 제2024-114-028호	경수고속도로(주)의 운행제한차량 단속을 위한 한국도로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80
제15회	(2024. 9. 11.) 제2024-115-029호	검찰의 형 집행 업무 수행을 위한 한국도로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189
제16회	(2024. 9. 25.) 제2024-116-030호	특허청의 부정경쟁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등을 위한 플랫폼사업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95
제16회	(2024. 9. 25.) 제2024-116-033호	중앙전파관리소의 불법무선국 운용 단속업무를 위한 해양경찰청 보유 어선 출입항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1

제17회	(2024. 10. 23.) 제2024-117-032호	창원시의 상수도 계량기 검침을 위한 전입 신고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209
제17회	(2024. 10. 23.) 제2024-117-033호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자체감사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217
제18회	(2024. 11. 4.) 제2024-118-034호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운영실태 점검 및 환수 업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23
제19회	(2024. 11. 13.) 제2024-119-035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230
제19회	(2024. 11. 13.) 제2024-119-036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피해자 유족 및 가족 지원을 위한 경찰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36
제20회	(2024. 11. 27.) 제2024-120-037호	인천광역시외의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42
제20회	(2024. 11. 27.) 제2024-120-038호	경찰청의 발달장애인 사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민감정보 등 처리에 관한 건	249
제21회	(2024. 12. 11.) 제2024-121-039호	광복회의 회원 복지·교육 등을 위한 국가보훈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59
【 참고사항 】 2012년 ~ 2023년 심의·의결안전 결정문 모음집 목차			265

2024년 결정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02-002호
안 건 명 서울특별시의 재난관리를 위한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 청 인 서울특별시장
의결연월일 2024. 1. 24.

주 문

서울특별시는 호우경보, 태풍경보, 홍수주의보 중 1개 이상 발령 시 재난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로부터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1월 24일

위 원 장 김 진 환
위 원 김 일 환
위 원 박 상 희

[별지]

1. 질의배경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 기관으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너목 및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이하 ‘서울시 재난안전조례’) 제3조에 따라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으며,
 - 재난안전법 제16조 제1항 및 서울시 재난안전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장 소속 하에 매년 5. 15. ~ 10. 15. 기간 동안 풍수해(호우, 태풍, 홍수)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22. 8. 8.에 발생한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로 인해 8명 사망, 680억 원 재산 손해 발생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서울특별시는 '23년에 기상레이더 모니터링 강화, 침수예정보제 시행, 침수취약가구 밀착관리를 시도하였으나 광범위한 서울특별시 면적 상 반지하, 저지대가 밀집한 지역의 침수를 모두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이에, 서울특별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우경보, 태풍경보, 홍수주의보 중 1개 이상 발령 시 재난발생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대비하고 대응하는 등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로부터 CCTV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호우경보, 태풍경보, 홍수주의보 중 1개 이상 발령 시 풍수해 재난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로부터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서울특별시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로부터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보호법 제18조 제2항 검토순서〉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법률상 소관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하여 목적 외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제1, 2, 3, 6, 7, 8, 9, 10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은 제18조 제2항 제10호를 제5호에 우선하여 검토함

-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관리, 교통단속 등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CCTV를 통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서울특별시가 재난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는 것은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 동조 제2항 제10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23. 3. 14. 개정되어 ‘23. 9. 15. 시행된 현행 보호법에서는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제외하고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부분을 삭제하여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제15조제1항제7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제18조제2항제10호)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음

1)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0호의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경우’란 감염병, 전쟁, 천재지변, 긴급재난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평온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상당할 때 이를 방지하거나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경우를 의미함
- 「기상법」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기상특보란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의미하고, 「예보업무규정」 제17조에 기상특보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예상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고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예보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특보구역의 기상상황이 특보기준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해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보를 발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또는 지역적 특성으로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보를 발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기상청이 기상특보 2단계인 호우경보와 태풍경보를 발령했다는 것은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홍수주의보는 「기상법」에 따른 기상특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이 한강의 경우 수위가 8.5m를 넘어가는 등 홍수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홍수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예보로 호우경보 발령 이후 상황이 더욱 심각할 때 홍수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호우경보와의 연관성과 최근 발령 빈도를 고려하면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발령된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서울특별시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같은 법 제3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여야 함
-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호우경보, 태풍경보, 홍수주의보 발령 시 침수 위험 지역을 확인하고 위험 요소 발견 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를 안내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사망 사고를 막는 등 더 큰 인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인 점,
 - 기상청의 호우경보, 태풍경보 발령, 홍수통제소장의 홍수주의보 발령을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점,
 - 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을 때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하면,
 - 호우경보, 태풍경보, 홍수주의보 발령 시 서울특별시가 재난발생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제거하는 등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짧은 시간안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의 위험성과 파급력을 고려하면 지방자치 단체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침수 위험 지역 거주민들에게 대피 안내를 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 기상레이더 모니터링만으로는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 저지대 밀집 지역의 실제 침수 여부, 위험 정도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어려우므로 이를 위해서는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일례로,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우(100mm/hr)가 발생한 '22. 8. 8. 기상레이더 상 강우 상황이 급변한 지 한 시간만에 상도동 주택 침수로 인한 고립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지하주차장과 지하 주택에 고립되어 일가족이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음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서울특별시가 자치구로부터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큰 점,
 - 서울특별시는 기상특보 2단계인 호우경보, 태풍경보 및 홍수주의보 발령시로 한정하여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를 최소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건 영상정보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건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03-003호
안 건 명 서민금융진흥원의 이해충돌·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건
신 청 인 서민금융진흥원장
의결연월일 2024. 2. 14.

주 문

1. 서민금융진흥원은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임직원의 자기 가족에 대한 신용 보증·자금대출 업무 수행을 자동 차단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해당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성명·생년월일·성별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수집·이용할 수 없다.
2. 서민금융진흥원은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임직원의 자기 가족에 대한 신용 보증·자금대출 업무 수행을 자동 차단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수지급 등 다른 목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해당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성명·생년월일·성별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이용할 수 없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2월 14일

위 원 장 김 진 환

위 원 김 일 환

위 원 박 상 희

[별지]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제3조에 따라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조사·연구 및 대외 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 은행을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에서 가족 명의를 이용한 각종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진흥원은 신용보증·자금대출 업무 수행에 있어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고자 함
- 이와 관련하여 서민금융법은 임직원이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인에 대한 신용보증·자금대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 이해충돌 방지 등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4호는 “이해충돌”에 대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고, 부패 발생의 예방 및 부패행위의 효율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는 “부패행위”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진흥원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¹⁾

1) 「2024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 인사혁신처고시 제2023-8호 참조

되어 있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에 해당²⁾하고, 진흥원의 임직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가족에 대해 직접 신용보증·자금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가족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에 해당할 것이므로

- 진흥원은 임직원의 신용보증·자금대출 업무 수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가족 명의를 이용한 금융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 이에 진흥원은 임직원이 방문고객을 대면하여 직접 신용보증·자금대출신청에 대한 접수·심사·승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과 신청인이 가족관계에 있는 때에는 전산업무시스템상 임직원의 자기 가족에 대한 신용보증·자금대출 업무 수행이 자동 차단되도록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하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³⁾을 구축하고자 하며

- 이를 위해 신용보증·자금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성명·생년월일·성별에 대한 정보(이하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나. 질의내용

- 1) 진흥원이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집⁴⁾ 또는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항 라목 참조

3) 신용보증·자금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업무시스템에 입력해두고, 신청인의 개인정보와 대조를 통해 임직원이 자신의 가족에 대한 신용보증·자금대출 업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시스템상 업무의 진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

4) 진흥원은 취업규칙이나 관련 내규에 가족정보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족정보를 수집하고자 함

-
- 2) 진흥원이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보수지급 등 다른 목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 가. 진흥원이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집·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 여기서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정부조직법」과 각 기관별 직제령·직제규칙 및 개별 조직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사무 이외에 「주민등록법」·「국세기본법」·「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령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과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등을 포함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23. 3. 8. 제2023-104-009호 결정 참조]

- 이해충돌방지법은 제3조에서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2항), 공직자가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제3항)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구체적으로는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에게 일정한 신고·제출의무를 부과⁵⁾하고 공직자 또는

5)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신청(제5조),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8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공공기관이 하지 말아야 할 제한·금지행위를 규정⁶⁾하고 있으며, 그밖에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제24조)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의무(제25조), 그리고 법 위반 공직자에 대한 소속기관의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제21조)·부당이득의 환수(제22조)·징계(제26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3조에서 공공기관은 부패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제1항),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하며(제2항),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는 등(제3항)의 일반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 같은 법 제8조에서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리고 같은 법 제55조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6조에서는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81조의2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공직자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

(제15조) 등

6)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제10조),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제13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제14조) 등

-
-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입법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그리고 부패 발생의 예방과 부패행위의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가능한 여러 수단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가능한 여러 수단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결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4헌마213 결정 참조)
 -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관계 법령은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일반적인 책무와 공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공직자에게 회피신청 및 각종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 소속 기관으로 하여금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속 기관이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 진흥원의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진흥원은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련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수집·이용할 수 없음
- 나. 진흥원이 이해충돌 또는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진흥원이 보수지급 등 다른 목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진흥원이 보수지급 등 다른 목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고
-

-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 여기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는 허용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률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때에는 조례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1. 18. 제2017-27-210호 결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7. 8. 제2019-13-211호 결정 참조]
 - “2. 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관련 위임 법령은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 진흥원의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진흥원은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진흥원이 보수지급 등 다른 목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의 가족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이용할 수 없음

다. 검토 결과

- 1) 진흥원은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해당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수집·이용할 수 없음
- 2) 진흥원은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진흥원이 보수지급 등 다른 목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이용할 수 없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01-001호
안 건 명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방지 업무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 청 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
의결연월일 2024. 2. 28.

주 문

1.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방지 업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성장호르몬·이노제의 구매자 중 명백하게 선수로 확인된 자의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및 구매 내역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이메일 주소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경기단체 등록선수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2.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식약처로부터 제공받은 명백하게 선수로 확인된 자의 개인정보 중 경기단체 등록선수가 아닌 자로 확인된 자의 개인정보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에서 더 이상 그 처리가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관계기관 간 도핑방지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공유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및 관계 법령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2월 28일

위 원 장 김 진 환
위 원 김 일 환
위 원 박 상 희

[별지]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정보 수집 및 연구, 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도핑 검사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 같은 법 제35조의2에서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검사 배분 계획에 따라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를 대상으로 ‘경기기간 중의 도핑 검사’와 불시에 검사를 실시하는 ‘경기기간 외 도핑 검사’를 병행하는 한편, 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도핑에 관한 제보를 받아 도핑 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한국도핑방지규정」에 따른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선수에 대해 경기 결과의 자동 실효·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금지약물이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더욱 은밀하고 빈번하게 거래되고 있는 현실이고, 매년 경기단체 등록 선수의 수는 약 30만 명에 이르는데 도핑 검사에는 1회에 약 50~1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검사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에 어려운 실정이며
 - 최근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 도핑 검사 회피 방법이 공유되는 등 도핑 검사를 통해 도핑방지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제보에 의한 적발 건수는 계속해서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등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방지 업무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도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변이나 혈액 등의 시료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도핑 검사 이외에 금지약물에 대한 불법 유통 정보 등의 수집을 통해 도핑 방지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등 다양한 도핑 방지 수단을 병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 뉴질랜드·프랑스·오스트리아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도핑 검사 방식만으로는 도핑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식약품 관리 기관이나 수사기관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도핑 사건을 적발하는 경우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 우리 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약사법」을 위반한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 판매자에 대한 수사 시 수집한 스테로이드 구매자 정보 중 ‘명백하게 선수로 확인된 자의 성명·휴대전화번호·구매 관련 SNS 및 이메일’을 도핑방지 위원회의 스테로이드 구매선수 제재를 위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의결한 바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1. 13. 제2020-01-003호 결정 참조)

○ 도핑방지위원회는 2020~2022년의 기간 동안 식약처로부터 총 18명의 스테로이드 불법 구매선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도핑방지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그중 11명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였으나

- 도핑방지위원회가 식약처로부터 제공받는 정보는 스테로이드를 불법 구매한 선수의 개인정보로 제한되어 있어, 스테로이드와 함께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성장 호르몬·이노제와 같은 금지약물에 대한 도핑 방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장호르몬·이노제를 불법 구매한 선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도핑방지위원회는 식약처가 「약사법」 제44조·제61조·제62조 등의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성장호르몬·이노제의 불법 구매자 중 명백하게 선수로 확인된 자의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및 구매 내역 정보⁷⁾를 식약처로부터 제공받아

7) 구매 내역 정보는 구매 계약·구매한 약물의 종류·구매일시·금전 거래 내역 등 선수로 확인된 자의 성장호르몬·이노제 구매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

-
-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이메일 주소를 통해 경기단체 등록 선수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 내역 정보를 이용하여 경기단체 등록 선수로 확인된 자의 도핑방지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자 함

나. 질의내용

- 도핑방지위원회가 도핑 방지 업무를 위하여 식약처의「약사법」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성장호르몬·이노제의 구매자 중 명백하게 선수로 확인된 자의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및 구매 내역 정보(이하 ‘본 건 선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 「약사법」 제44조·제61조·제62조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는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벌칙이 부과되고, 식약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2조에 따라 의약품에 관한 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바
- 식약처가 「약사법」 위반사건에 관하여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 등의 자료로서 수집한 본 건 선수 개인정보를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방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고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
- 여기서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가.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방지 업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네스코 스포츠도핑방지국제협약」은 2007. 2. 25. 비준을 거쳐 같은 해 4. 1. 발효된 다자조약으로 여기에는 「세계도핑방지규약」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고
 -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따라 국내에서의 도핑방지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한국도핑방지규정」은 선수의 시료 내에 금지약물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선수가 금지약물을 보유하거나 금지약물을 부정거래하는 경우 등을 모두 ‘도핑방지규정 위반행위’로 정하고 있으며
 -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경기대회 결과의 실효·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는 도핑방지위원회의 업무로 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도핑 검사 결과 관리 및 그 결과에 따른 제재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 도핑방지위원회가 도핑방지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제재를 부과하는 등의 도핑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유네스코 스포츠도핑방지국제협약」·「세계도핑방지규약」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함

**나. 도핑방지위원회가 식약처로부터 본 건 선수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한 도핑 검사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기단체에 등록된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검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특히 호르몬계 금지약물의 경우 잔류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도 최근에는 도핑검사 회피 방법의 공유 등으로 인하여 검출에 어려움이 있고
 - 도핑방지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도핑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으나 그 실적이 저조하여 효과적인 도핑 방지 수단이 되고 있지 못함
- 또한, 도핑방지규정 위반행위에는 금지약물 복용 행위뿐만 아니라 금지약물의 보유·사용 시도·부정거래 행위 등 여러 행위유형이 포함되고, 이러한 유형의 위반행위는 도핑 검사만으로 적발할 수 없으므로 선수의 금지약물 보유·부정거래 행위 등을 적발하여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금지약물에 대한 불법 판매·유통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 「한국도핑방지규정」 제8조 제2항은 선수의 경기단체 등록 시 「한국도핑방지규정」의 수용을 등록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9조 제6호에서 선수는 도핑방지규정 위반과 관련한 도핑방지기구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강제적인 수사 권한이 없는 도핑방지위원회가 선수를 조사하여 도핑방지규정 위반행위를 직접 밝혀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한편, 도핑방지위원회는 2020~2022년의 기간 동안 식약처로부터 18명의 스테로이드 불법 구매선수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도핑방지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1명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였는바, 이러한 방법은 도핑 방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고

- 도핑방지위원회가 도핑 검사 외의 방법이 필요한 도핑방지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도핑 방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사 권한이 있는 기관과의 공조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도핑 검사는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 등의 한계가 있고 다양한 유형의 도핑방지 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공조가 불가피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핑방지위원회가 성장호르몬·이노제에 관한 「약사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식약처로부터 본 건 선수 개인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성장호르몬·이노제에 관한 도핑 방지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므로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도핑방지위원회가 본 건 선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도핑방지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그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 등에 따른 정당한 업무수행에 해당하고
- 도핑방지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정보주체가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로서 이를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정보주체의 부당한 이익 침해로 보기는 어려움
- 또한, 도핑 방지 활동은 스포츠 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보주체인 선수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가 일반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공정 질서의 확립이라는 공익이 상당하다 할 수 있고
- 도핑방지위원회가 식약처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본 건 선수 개인정보는 식약처가 성장호르몬·이노제에 관한 「약사법」 위반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구매자 중 명백하게 선수로 확인된 자의 정보로서, 이는 수사 권한이

없는 도핑방지위원회가 성장호르몬·이노제에 관한 선수의 도핑방지규정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보이는 점을 비추어 볼 때

- 도핑방지위원회가 도핑 방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약처로부터 본 건 선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라. 결론

○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방지 업무를 위하여 식약처로부터 본 건 선수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 다만, 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식약처와 도핑방지위원회는 경기단체 등록선수 여부 확인을 위한 구매자 인적정보 제공 시 구매자의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모두가 일률적으로 제공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식약처가 수집한 구매자의 위 정보 중 경기단체 등록선수 여부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적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 도핑방지위원회는 경기단체 등록 선수에 대한 도핑 방지 업무를 위해 식약처로부터 본 건 선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므로, 식약처로부터 받은 “명백하게 선수로 확인된” 구매자 중 경기단체 등록 선수가 아닌 자로 확인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범위에서 더 이상 그 처리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 아울러,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스테로이드 구매 선수 제재를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처 보유 개인정보 제공 관련 변경 질의에 관한 건」[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01-003호(2020.1.13)]에서 의결한 스테로이드 구매 선수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식약처와 도핑방지위원회는 본 의결과 같은 취지로
처리할 것을 권고함

3. 권고 사항

- 도핑과 관련된 금지약물의 종류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도핑방지규정 위반
행위는 금지약물의 복용 행위뿐만 아니라 금지약물의 보유·사용 시도·부정거래
행위 등 여러 행위유형이 포함되므로, 수사권한이 없는 도핑방지위원회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필요한 실정이며
- 「세계도핑방지규약」은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각 정부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범위에서 도핑 근절에 유용한 정보가 적시에 공유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도핑방지기구 간 협조를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문화체육관광부는 도핑방지위원회와 관계기관 간 도핑방지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공유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및 관계 법령을 개선할 것을
권고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05-005호
안 건 명 파주시의 성매매방지 홍보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 청 인 파주시장
의결연월일 2024. 3. 13.

주 문

파주시는 성매매방지 홍보를 위한 성매수행위 금지 및 처벌 사항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목적으로 성매매집결지를 출입하는 자동차소유주를 특정하기 위하여 방법용 CCTV 영상정보에서 추출한 자동차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자동차소유주의 성명·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3월 13일

위 원 장 김 진 환

위 원 김 일 환

위 원 박 상 희

[별지]

1. 질의배경

- 신청인/신청일 : 경기도 파주시장 / 2023. 11. 23.
- 파주시는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에 소재한 성매매집결지(용주골, 이하 ‘집결지’) 폐쇄를 위하여 2023년 1월부터 TF 조직, 경찰·소방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성매매 단속, 성매수자 차단 활동,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조례 제정 등 집결지 폐쇄 정책을 추진중에 있음
 - 파주시는 집결지 폐쇄를 위해 성매매피해자에 대해 지원시설 및 생계·주거·의료·법률·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집결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음주단속 및 시민·공무원으로 구성된 대규모 합동순찰 등을 통해 성매수자에 대한 단속·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 범시민 서명운동, 캠페인, 해시태그 운동과 지지선언, 집결지 내 시민지원단의 피켓 활동, 홍보물 배부 등의 방법으로 집결지 폐쇄 및 성매매 근절을 위한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집결지 내 CCTV에서 촬영된 자동차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성매매 처벌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함

* 성매매처벌법 제4조(금지행위) 및 제19조·제20조·제21조(벌칙) 제25조(몰수 및 추징) 규정 포함, 택배차량·지역주민 등 제외하고 발송

- 이에, 파주시는 안내문 발송을 위해 방법 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영상정보에서 추출한 집결지를 출입하는 자동차의 등록번호로 차적 조회를 하고, 이를 통해 자동차소유주의 성명·주소를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 이용하고자 하는 방법용 CCTV 대수 : 5대(집결지 내 1대, 집결지 입구 4대)

2. 질의내용

- 파주시가 성매매방지 홍보를 위한 성매수행위 금지 및 처벌 사항에 대한 안내문 (이하 ‘본 건 안내문’) 발송을 목적으로 성매매집결지를 출입하는 자동차소유주를 특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방법용 CCTV 영상정보에서 추출한 자동차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자동차소유주의 성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 파주시가 방법 목적으로 수집한 CCTV 영상정보를 집결지를 출입하는 자동차소유주를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홍보를 위한 본 건 안내문 발송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며,
 - 또한, CCTV 영상정보에서 추출한 집결지를 출입하는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차적조회를 통해 자동차 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자동차 관련 정보 (소유주 성명·주소)를 본 건 안내문을 발송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도 당초 수집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 CCTV 영상정보의 수집 목적(방법)과 차적조회 시스템 상 자동차등록번호·자동차소유주 성명·주소의 수집 목적(자동차 관리)이 각각 다르나, 모두 집결지를 출입하는 자동차소유주를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홍보를 위한 본 건 안내문 발송 목적이므로 각각의 개인정보(CCTV 영상정보,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 소유주 성명·주소) 이용을 한번에 검토하고자 함
-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
-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서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 이에 대해 검토함

가. 파주시의 본 건 안내문 발송 등의 성매매방지 홍보 업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홍보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상담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방법에 특별한 제약 없이 홍보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파주시의 본 건 안내문 발송을 포함한 범시민 서명운동, 캠페인, 해시태그 운동과 지지선언, 집결지 내 시민지원단의 피켓 활동, 홍보물 배부 등의 홍보 업무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로 볼 수 있음

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 검토 가.에서 살펴보았듯이 파주시는 이미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 본 건 안내문 발송 외에도 집결지 입구 인근에서 성매매 방지 포스터 및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집결지를 출입하는 자에게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의 다른 홍보활동도 가능하므로, 본 건 안내문 발송의 방법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집결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성매매 목적으로 출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본 건 안내문 수령으로 성매수자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

- 본 건 안내문 수령 사실이 가족 등 제3자에게 알려지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
- 정보주체는 해당 장소를 통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본인의 개인정보(CCTV 영상정보·자동차등록번호·성명·주소)가 본 건 안내문 발송을 위해 이용될 수 있음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05-006호
안 건 명 태안군의 피학대동물 격리 조치 등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 청 인 태안군수
의결연월일 2024. 3. 13.

주 문

태안군(농정과)은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학대동물 구조 및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와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조치를 목적으로 태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CCTV 통합관제센터는 제3자의 개인영상 정보를 마스킹 처리하는 등 적절한 비식별 조치를 취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3월 13일

위원장	김진환
위원	김일환
위원	박상희

[별지]

1. 질의배경

- 태안군(농정과)은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023.12.11. 심한 상처를 입어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유기견이 발견됨에 따라,
 -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의 동물학대 여부 확인과 동조 위반에 따른 고발 증거 활용 등의 목적으로 태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 영상확인을 요청함

2. 질의내용

- 동물보호법 제10조 위반 여부 파악을 위해 태안군 통합관제센터에 CCTV 영상 정보를 제공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의거하여 정보제공 * 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제3자 마스킹 처리 등의 조치 후 제공 예정

3. 판단

가.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2조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태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태안군 행정지원과에 설치된 기구이고 태안군 농정과는 소속부서로,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태안군으로 판단됨
- 따라서 태안군 행정지원과로부터 농정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3자 제공이 아니고 범죄나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수집한 태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를 동물학대 확인 등의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임

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인지 여부

-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은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고 제34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동물 등에 대한 구조 및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동물을 발견하였을 때 피학대동물을 구조 및 보호하고,
 -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목적으로 행위자를 특정하는 것은 태안군의 소관업무에 해당함

2)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위 2022. 6. 22. 의결 제2022-111-026호)
- 태안군이 피학대동물 구조 및 보호,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등을 위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보와 위반행위의 입증이 필요한데,
 - 동물학대는 대부분 사적 공간에서 벌어지며 피해 당사자인 동물의 직접 증언이 불가능하고 목격자가 없거나 목격자가 있더라도 목격자 진술만으로 신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CCTV가 아니면 동물학대 행위자 특정과 동물학대를 입증하기 현저히 곤란하여 태안군이 통합관제센터의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

- CCTV 영상정보가 정보주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의 용도로 쓰이나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공익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보호법 제25조에 따른 CCTV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어 불특정 다수의 개인영상정보가 수집될 수 있으나,
 - CCTV 통합관제센터가 영상정보를 마스킹 처리 등의 비식별 조치 후 농정과에서 이용한다면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05-007호
안 건 명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안전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지자체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 청 인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2024. 3. 13.

주 문

1.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안전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간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등 재난관련 기관은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고 급박하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안전부가 구축·운영하는 ‘중앙재난안전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지자체로부터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이 경우,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등 재난관련 기관은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처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목적 달성 등의 경우 제공받은 개인영상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3월 13일

위 원 장 김 진 환

위 원 김 일 환

위 원 박 상 희

[별지]

1. 질의배경

- 10.29 참사를 계기로 재난상황실에서 현장영상 확보 및 상황파악, 기관 간 영상 공유 등이 중요시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24년에 지자체 CCTV 플랫폼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재난 발생 시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은 재난·방법 등 CCTV 영상정보를 상황관리 (현장파악 등)에 활용하고, 관련기관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전 파하는 등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며,
 -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8조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등
- 행정안전부 플랫폼을 소방청(119종합상황실) 등 재난관련 기관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CCTV(재난·방법 등) 플랫폼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하는 '중앙재난안전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이 행정안전부-지자체 간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업무위탁에 해당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위·수탁 기관 간 문서가 필요한지 여부
- 업무위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플랫폼 운영 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플랫폼 공동활용 기관에서 지자체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행정안전부에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자체 CCTV 플랫폼을 연계하여 '중앙재난안전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중앙재난안전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에는 개인정보의 전송, 전달, 이전, 열람, 조회, 수정, 보완, 삭제, 공유, 보존, 파쇄 등이 포함되나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단순히 전달, 전송 또는 통과만 시켜주는 행위는 처리에 해당하지 아니함(「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20.12.)

○ ‘중앙재난안전 통합플랫폼’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등 재난관련 기관이 공동활용하여 각 기관에서 재난 발생 시 상황관리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해당지역 CCTV 영상정보를 조회할 계획이고,

– ‘중앙재난안전 통합플랫폼’은 지자체의 CCTV 영상정보를 재난관련 기관에 단순히 전달, 전송 또는 통과만 시키도록 구축하고 별도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는 않을 계획임

– 이 경우, ‘중앙재난안전 통합플랫폼’의 운영주체인 행정안전부는 선량한 관리책임인 시스템 관리 및 보호의무를 다해야 하고, 전달·전송·통과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저장, 가공 등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처리행위를 할 수 없음(개인정보위 2018. 10. 1. 의결 제2018-18-190호)

○ 따라서 ‘중앙재난안전 통합플랫폼’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이 성립하지 않음

나. 재난관련 기관에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자체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지자체 CCTV 영상정보 제공이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CCTV의 설치·운영 목적은 범죄의 예방·수사, 시설 안전·관리, 화재 예방, 교통정보 수집·분석·제공 등이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3조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고 사회재난은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을 말함
 - 따라서 지자체 CCTV 설치·운영 목적과 재난 관련 CCTV 이용 목적은 서로 상이하므로 지자체 CCTV 영상정보를 재난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2)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에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재난안전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 헌법재판소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 의무는 재난안전법에 구체화되어 있다고 결정함(2023.7.25. 선고 2023헌나1 전원재판부)
- 재난안전법이나 소방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관리를 위해 정확한 상황판단을 통한 적절한 지휘가 중요하고 피해자 긴급구조 및 지원 등의 대응을

위하여 해당 재난지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정보가 필요함

- 과거 사회적 재난과 관련 지자체 CCTV를 소방 등이 활용하지 못해 사건 현장을 확인할 수 없어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도 있음
 - 이에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영상 확보, 상황파악 및 신속 대응 등을 위해 지자체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여야 함(개인정보위 2018. 10. 1. 의결 제2018-18-190호)
 -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우려가 현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이익에 대한 위해가 명백하고 급박한 경우여야 하고, 이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공할 수 없음(개인정보위 2016. 1. 25. 의결 제2016-02-04호)
- 따라서 재난관련 기관은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고 급박하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로부터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고, 제25조 제6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06-008호
안 건 명 김포시의 외국인 아동 입학안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 청 인 김포시장
의결연월일 2024. 3. 27.

주 문

김포시는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90일 이내에서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체류지가 김포시로 등록된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외국인 아동의 성명, 체류지 주소 및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3월 27일

위 원 장 김 진 환

위 원 김 일 환

위 원 박 상 희

[별지]

1. 질의배경

- 김포시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도시로, 해당 협의회는 다문화사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 제17조 제1항에 ‘읍·면·동의 장은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취학의무 대상자가 아닌 외국인 아동은 읍·면·동이 작성하는 취학아동명부에 포함되지 않아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보호자가 취학통지를 받지 못하여 외국인 아동이 적절한 시기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이에, 김포시는 관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학군, 예비소집일, 입학방법 등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체류지가 김포시로 등록된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외국인 아동의 성명, 체류지 주소 및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김포시가 관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학군, 예비소집일, 입학방법 등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체류지가 김포시로 등록된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외국인 아동(이하 ‘본 건 정보주체’)의
성명, 체류지 주소 및 연락처(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김포시가 관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기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를 위하여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김포시가 외국인 아동
에게 입학안내를 하기 위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김포시가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는 것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17조 제2항에 ‘읍·면·동의 장은 매년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입학할 학교와 입학기일을 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취학의무 대상자인 대한민국 국적
아동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17조에 따른 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
학교의 장에게 입학을 신청’할 수 있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책무 규정을 두고 있고(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신청을 할 수 있고, 입학 가능한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대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 김포시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인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는 것은 국내 공교육 제도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부족한 재한외국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할 것임

2)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위 2017. 1. 9. 제 2017-01-06호 결정 참조)

-
- 일반적인 제도 및 정책에 대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홍보·안내를 하는 경우 보도 자료 배포, 현수막 게시, 전광판 광고 등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 김포시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가 국내 초등학교 입학 신청의사가 있음에도 해당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김포시가 각 아동이 체류하는 곳에서 입학 가능한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 등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맞춤형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군·구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김포시는 관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등록표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필요한 경우 특정 개인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 6세에 달하는 자를 추출하는 경우 국적, 생년월일, 체류자격 등 김포시가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 이상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되고 이는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 따라서 법무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고서는 김포시가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衡量하여 판단하여야 함(개인정보위 2018. 11. 12. 제2018-23-268호 결정 참조)
- 본 건 개인정보는 김포시가 취학기인 외국인 아동에게 입학 가능한 학군 등 개별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로 이로 인해 침해될 정보주체의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데 비해,
 - 김포시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입학 안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인 아동이 내국인 아동과 동일한 시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지역사회로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본 건 정보주체에게 수혜적인 복지사업에 해당함
- 다만, 본 건 정보주체 중 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서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이하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생활할 목적으로 거주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 아동을 대한민국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의사가 없음이 대다수일 단기체류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까지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기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해당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건 정보주체 중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다면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06-009호
안 건 명 국회 등의 자료제출 요구 관련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 청 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의결연월일 2024. 3. 27.

주 문

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국회나 지방의회가 감사 및 조사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등을 요구하는 경우, 처리 목적이 명확하고 필요한 최소한으로 처리하며 개인정보 처리로 얻는 공익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보다 큰 경우 등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3월 27일

위 원 장 김 진 환

위 원 김 일 환

위 원 박 상 희

[별지]

1. 질의배경

- 국회 및 시의회는 각각 국정감사 및 행정감사를 이유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이하, TBS)가 방송한 프로그램에 투입된 예산 및 출연료 지급현황을 요구하고 있음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름, 출연료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 TBS가 국회와 서울시의회에 출연자의 출연료를 제공하는 것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질의내용

- 국회나 서울시회의가 각각 국회법 제128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출연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야하는 조치의 내용

3. 판단

- 개인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신청인 TBS는 출연료 정보를 출연료 지급과 무관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다만,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가. 국회법 제128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49조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는 형식적으로 규율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실질적 내용 면에서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해 수범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율하고 있어야 함
- 「국회법」 제128조 제1항은 위원회 등은 안전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감국조법”)」 제10조는 위원회 등은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국감국조법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 등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는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 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즉, 국회법 제128조와 국감국조법 제10조는 국회 상임위 등에서 관련 기관 등에게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요구를 받은 기관 등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감국조법 제8조와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를 고려하면 이들 서류 등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국회법 제128조와 국감국조법 제10조 규정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은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의회가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는 개인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는 그와 같이 개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어야 하며, 유사한 취지의 국회법 제128조 해석례에도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민주주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20.4.27. 제2020-08-125호, 2020.5.12. 제2021-108-015호, 2020.9.9. 2020-102-003 참고)
- 따라서, 국회 상임위 등에서 국회법 제128조와 국감국조법 제10조에 따라 또는 지방의회 등에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

나. 국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제공해야하는지 여부

-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을 고려하면, 법률의 모든 규정은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 보호 정신 등을 넘어 해석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제출 등의 요구와 활용은 국정감사 등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요구해야 함(법제처 해석례, 10-0202, 2010. 8. 23. 등)
 - 한편,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때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맥락에 비추어 처리 목적이 명확한지, 해당 개인정보 처리가 개별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지, 필요한 최소한의 처리인지, 개인정보 처리로 얻는 공익 등이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비해 우월한지 등을 비교형량해야 하며,
 - 이는 해당 개인정보 처리를 하거나 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 맥락을 잘 이해하고 처리에 따른 결과를 보다 잘 예측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이해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1차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법작용에 의해 판단되어야 함
 - 질의 사안 관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해서 법률 규정만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아니 되고,
 -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헌법의 기본권 보장 정신에 비추어, 보호법상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국감국조법 상 감사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 등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

-
- 본 건의 경우, 위원회에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위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따라서, TBS는 현재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 국회나 지방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거쳐 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출연자의 출연료 정보를 수집하여 달성하려는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와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고, 이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가 개별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 감사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 등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국감국조법 제8조 취지를 훼손할 우려는 없는지 판단하는 한편,
- 최종적으로는 공익 등이 과연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비해 우월한지에 관해서도 비교형량 하여, 그 결과 처리의 타당성이 인정 되는지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참고로, 처리가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개인정보 침해가능성을 감소시킬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여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

다.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를 위해 조치할 사항

○ 보호법 제18조 제5항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TBS는 출연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감사 및 조사 목적으로 이용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해야 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07-010호
안 건 명 원주시의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 청 인 원주시장
의결연월일 2024. 4. 24.

주 문

원주시는 다중운집인파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고 급박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장소에 설치·운영 중인 방법용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축제기간 동안 상시로 이용할 수 없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4월 24일

위 원 장	조 소 영
위 원	윤 영 미
위 원	이 문 한

[별지]

1. 질의배경

- 신청인/신청일 : 원주시장/2023. 12. 27.
- 원주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재난의 예방·대응 등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너목에 따라 재해대책을 수립·집행하고 있으며, 재난안전법 제18조 제1항 및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원주시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에 따라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인 만두축제와 댄싱카니발*(이하 ‘본 건 지역축제’)에 대해 안전관리요원 배치, 관람객 동선 통제 및 분산·해산 조치** 등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에게 경찰관·소방관 배치, 보행 안전관리 등 협조 및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음
 - * 순간 최대 관람객 수 : 만두축제 약 1,800명, 댄싱카니발 약 14,000명
 - ** 조치기준 관람객 수 : 만두축제 약 1,500명, 댄싱카니발 약 10,000명
- 그런데 지역축제에 많은 수의 관람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명피해사고(이하 ‘다중운집인파사고’)와 같은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고,
 -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람객의 밀집도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관람객의 동선을 통제하거나 필요시 분산·해산 조치 등을 즉각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현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요원만으로는 비상시 적절한 대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원주시는 보다 효과적으로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장소에 설치·운영중인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영상정보를 축제기간

동안 이용하고자 함

※ 지역축제 개최장소에 설치된 CCTV 전체를 이용하고자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방법용 CCTV 대수는
만두축제 19대, 댄싱카니발 15대임

2. 질의내용

- 원주시가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장소에 설치·운영중인 방법용 CCTV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축제기간 동안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 원주시가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방법 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를 통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중운집인파사고는 짧은 시간안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위험성과 파급력이 크나 CCTV 영상정보 이용 역시 정보주체의 부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 본 건 CCTV 이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상황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이하에서는 다중운집인파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고 급박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하는 경우와 지역축제 기간 동안 상시로 이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고자 함

가. 원주시가 다중운집인파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고 급박한
경우에 한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1) 본 건 영상정보 이용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주시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 헌법재판소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 의무는 재난안전법에 구체화
되어 있다고 결정함(2023.7.25. 선고 2023헌나1 전원재판부)

○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는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우려가 현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이익에 대한 위해가 명백하고 급박한 경우여야 함(개인정보위 2024. 3.
13. 의결 제2024-105-007호 참조)

○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⁸⁾가 ‘발생’한 경우는 사망, 부상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가 명백하고 급박하므로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 다중운집인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우려가 현저
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의 이익에 대한 위해가 명백하고 급박한 경우여야 하고,

8) 다중운집인파사고는 재난안전법 제3조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다중운집인파사고는 대규모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사망자 159명, 부상 196명(행안부 23.1.3. 보도자료) 등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에 대해 다중운집인파
사고가 재난안전법이 적용됨을 전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등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난 예방·대응 의무 이행여부를 판단하였음(2023헌나1, 2023. 7. 25., 전원재판부 결정). 따라서
다중운집인파사고는 현행 재난안전법 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재난안전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의 피해 등에 포함될 수 있고, 2024. 7. 17. 개정 재난안전법에 사회재난으로 추가될
예정이므로 재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때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다중운집인파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고 급박한 경우에만 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2) 본 건 영상정보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다중운집인파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고 급박한 경우에는 CCTV 관제를 통해 축제현장 전체를 넓은 시야에서 효율적으로 확인하여 관람객을 분산·해산시키는 등 적절한 안전관리 조치와 응급조치·인명구조를 보다 신속하게 수행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공익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됨

나. 축제기간 동안 '상시로'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1) 본 건 영상정보 이용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주시는 본 건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장소에 설치된 모든 CCTV의 영상정보를 축제기간 동안 상시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많은 관람객의 운집이 예상되는 지역축제 행사가 진행된다는 것만으로는 다중운집인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하기 힘들고 국민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 임박하거나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같이 생명, 신체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위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 또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관람객 동선 통제, 관람객의 밀집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안내방송 및 관람객 분산·해산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에게 경찰관소방관 배치, 보행 안전관리 등 협조 및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는 등 다른 수단이 있으므로,

-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본 건 지역 축제 기간 동안 ‘상시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2) 본 건 영상정보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원주시가 지역축제 장소에 설치된 방법용 CCTV의 영상정보를 본 건 지역축제 기간 동안 상시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본 건 지역축제 장소를 방문하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며,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가 이용될 수 있음을 예측하기도 어려우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임

다. 결론

- 원주시는 다중운집인파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고 급박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장소에 설치·운영 중인 방법용 CCTV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음. 다만, 축제기간 동안 상시로 이용할 수 없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07-011호
안 건 명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건강검진 미수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 청 인 서울특별시장
의결연월일 2024. 4. 24.

주 문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년도에 건강검진 대상자였음에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면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성명, 생년월일, 동 단위 주소,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4월 24일

위 원 장	조 소 영
위 원	윤 영 미
위 원	이 문 한

[별지]

1. 질의배경

-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사목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유선 모니터링, 우편 안내, 직접 방문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각 자치구는 보건소 진료 대상자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정기적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발견하는 경우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로 등록하고 건강기초평가를 수행한 후 SOS 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연계하여 안내하고 있음
- 한편, 서울특별시는 건강검진 장기 미수검자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미수검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검진 미수검율이 매년 약 30%에 달하며, 고령 일수록 미수검율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자치구와 협의함
- 이에,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관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방문건강관리 등록 의사를 확인하고 건강기초평가 수행 및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 안내 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년도에 건강검진대상자였음에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면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성명, 생년월일, 동 단위 주소, 연락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관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으로부터 전년도에 건강검진대상자였음에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면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이하 ‘본 건 정보주체’)의 성명, 생년월일, 동 단위 주소, 연락처(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 가.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본 건 정보주체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단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1)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본 건 정보주체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4조)

○ 이에, 서울특별시는「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의 질병예방 및 지속관리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노인 건강 증진사업을 개발하고 동 단위 지역에 적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고(제3조),

-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건강관리 등 노인 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4조),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 특별시 자치구의 법률상 소관업무에 해당함

2)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위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 「노인복지법」 및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인력 및 예산 제약상 대상자를 한정할 필요성이 있어 건강검진 미수검자로 대상자를 한정하였고,

-
-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본 건 정보주체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은 건강에 대한 무관심 또는 거동이 불편함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병원동행서비스 등 자치구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하여 1:1로 설명하고 등록 의사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본 건 정보주체가 자치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자치구가 직접 매년 관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어르신들을 발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공단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자치구가 본 건 정보주체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衡量하여 판단하여야 함(개인정보위 2018. 11. 12. 제2018-23-268호 결정 참조)
- 자치구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자치구에서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안내하여 최소한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수혜적인 행정행위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한 것임
- 또한, 본 건 개인정보는 자치구가 본 건 정보주체에게 방문건강관리 등록 의사 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이며, 정보주체가 방문건강관리 등록을 거부할 경우 본 건 개인 정보를 즉시 파기할 예정인 바, 본 건 개인정보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08-012호
안 건 명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환수를 위한 통일부 보유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 청 인 통일부장관
의결연월일 2024. 5. 8.

주 문

1.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른 급여의 환수 및 환수금의 고지·독촉·채납처분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되었다가 취소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국민연금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2.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되었다가 취소된 자의 명단, 보호결정일, 보호취소일을 국민연금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5월 8일

위 원 장	조 소 영
위 원	윤 영 미
위 원	이 문 한

[별지]

1. 질의배경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에 대한 보호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정원 조사 및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이 아닌자가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하여 위 절차를 거쳐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을 받은 경우가 확인되어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서 판결 등으로 위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통일부에 통보하면,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 취소처분을 하고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위장 신분은 관련 기관을 통하여 박탈(가족관계등록부 폐쇄 등)하게 됨
- 통일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법무부 등이 보유한 행정서비스 이용 실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이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의 국민연금을 수급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음

2. 질의내용

- 통일부가 공단의 요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결정이 되었다가 취소된 사람의 자료(명단, 주민등록번호, 보호결정일, 보호취소일 등)를 제공하여도 되는지 여부
 -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되었다가 취소된 사람(개인을 특정하여 요청하는 것이 아님)의 자료를 공단에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또는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에 따른 국민연금 특례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취소되는 자가 발생한 경우 통일부에서 공단에 해당 자료를 임의 제공하여도 되는지 여부

-
-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되었다가 취소되는 사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람에 대한 자료를 공단에 제공하는 경우 보호법 제18조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또는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3. 판단

가.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 보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는 민감정보를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 인종·민족 정보, 생체인식 정보에 관한 정보로 열거하고 있어 그 외의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취소된 사실은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로 볼 수 없음

나. 공단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어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에 한해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3조의2 제1항에 따라 같은법 제57조에 따른 급여의 환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음

다. 통일부가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취소된 자의 정보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통일부가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취소된 자의 명단, 보호결정일, 보호취소일을 국민연금 환수를 위한 목적으로 공단에 제공하는 것은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동조 제2항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등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에 따라 보호 결정된 50세 이상 60세 미만(보호 결정 당시 나이)인 보호대상자는 같은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환수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법 제123조 제2항에서 공단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게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지급 등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의3 제4항 및 별표 2의3에 따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 경우 국가기관, 지자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3 제4항 및 별표 2의3 제2호에서는 북한이탈법에 따른 보호 결정이 취소된 자의 명단, 보호결정일, 보호취소일에 관한 자료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 누묵은 국가가 보유한 자료로서 같은법 제2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정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국민연금법 제123조는 공단이 통일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법 보호결정이 취소된 자의 명단, 보호결정일, 보호취소일을 제공받을 수 있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없음

2)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국민연금 부정수급 예방이 공단의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환수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1조 제1항은 수급자가 수급권의 소멸에 관련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취소된 자가 북한이탈법 제26조의2에 따라 받는 국민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취소하고 국민연금을 환수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것은 소관업무에 해당함

나) 통일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취소된 자의 정보(명단, 보호결정일, 보호취소일)를 받지 않으면 공단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
(개인정보위 2022.4.13. 제2022-106-013호 결정 참조)

○ 공단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부정지급 등을 예방하고 부정수급한 연금을 환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을 취소하면 공단은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소하고 국민연금을 환수하여야 함

- 공단은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취소된 자의 정보를 통일부로부터 제공받지 않으면 북한이탈주민법 특례 규정에 의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보호결정이 취소되어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고 부정수급 환수대상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

○ 통일부가 공단에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취소된 자 전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으면서 보호결정이 취소된 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 이들의 개인정보가 공단에 제공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취소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 명단 전부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함
- 또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이라는 공적 이익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라) 소결론

○ 통일부는 공단의 제공 요청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되었다가 취소된 자의 명단, 보호결정일, 보호취소일을 공단에 제공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08-013호
안 건 명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른
한국마사회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 청 인 한국마사회장
의결연월일 2024. 5. 8.

주 문

한국마사회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감사 대상자의 경마공원 및 장외발매소 출입기록, 마권 구매 등 베팅내역, 제세환급금 등 거래내역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감사원법 제27조에 따라 감사원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마사회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감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5월 8일

위 원 장	조 소 영
위 원	윤 영 미
위 원	이 문 한

[별지]

1. 질의배경

-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정한 공기업이자 감사원법에서 규정한 감사 대상 공공기관임
- 한국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하면서 경마공원(본장(서울, 부경, 제주)) 및 장외발매소(지사 사업장(26개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마권(승마(勝馬)투표권)을 발매하며,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제세환급금을 지급하는데,
 - 감사원에서 감사 수행을 목적으로 한국마사회에 감사 사항과 관련하여 특정한 또는 특정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마공원 및 장외발매소 출입기록, 베틱내역, 제세환급금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참고로, 한국마사회의 경마공원 및 장외발매소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입장권’을 구매해야 하고, 경주마에 베틱하기 위해서는 ‘마권’을 구매해야 하며, 입장권 및 마권 구매 방식은 크게 ‘전자카드 서비스(모바일 앱·계좌)를 통한 구매’와 ‘현장(현금) 구매’ 2가지로 구분됨
 - ‘전자카드 서비스를 통한 구매’는 모바일 ‘전자카드 서비스’ 앱에서 본인 명의로 회원 가입 및 계좌 개설하여 구매하는 것을 말하고, ‘현장 구매’는 경마공원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된 유·무인발매기를 이용하여 비실명으로 현금 구매하는 것을 말하며, 현장 구매 시에는 결제 수단이 현금으로 제한(카드 결제 불가)됨
- 또한, ‘경마공원’의 경우 입장권을 전자카드 서비스를 통해 구매하는 자는 좌석 예매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좌석을 별도로 예매하지 않더라도 입석으로 입장할 수 있으며, 입장권을 현장 구매하는 자는 좌석 예매 여부를 선택할 수 없고 입석으로만 입장할 수 있음

- 반면, ‘장외발매소’의 경우 입석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좌석을 예매해야 하고, 입장권을 현장 구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자 메시지로 지정좌석 위치가 포함된 모바일 입장권을 전송함
-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경마공원 및 장외발매소에서 입장권 또는 마권을 전자카드 서비스를 통해 구매한 자의 출입내역, 마권 구매 등 베팅내역, 제세환급금 등 거래내역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경마공원에서 입장권을 현장 구매하고 입석으로 입장한 자의 개인정보는 수집할 수 없음
- 즉, 한국마사회는 고객 관리(부정이용 방지와 비인가사용 방지,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회원등급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관리, 고객관계관리 등)를 위하여 ‘입장권을 전자카드 서비스를 통해 구매한 자의 경마공원 및 장외발매소 출입 내역’, ‘입장권을 장외발매소에서 현장 구매하고 좌석을 예매한 자의 장외발매소 출입 내역’, ‘마권을 전자카드 서비스를 통해 구매한 자의 마권 구매 등 베팅내역과 제세환급금 등 거래내역’을 수집·이용하며,
 - ‘입장권을 경마공원에서 현장 구매하고 입석으로 입장한 자의 경마공원 출입 내역’, ‘마권을 현장 구매한 자의 마권 구매 등 베팅내역과 제세환급금 등 거래내역’은 수집하지 않음
- * 다만, 마권을 현장 구매하였더라도 제세환급금이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급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을 수집함

2. 질의내용

- 한국마사회가 감사원의 자료 요구에 따라 특정인 또는 특정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마공원 및 장외발매소 출입기록, 마권 구매 등 베팅내역, 제세환급금 등 거래내역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감사원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한국마사회가 감사원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특정인 또는 특정 공공기관 종사자가 소속 기관의 휴무일(토·일요일)에 경마공원 및 장외발매소 출입 및

베틀한 정보와 감사원법에서 규정한 감사 대상기관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가 아닌 일반인(민간인)의 경마공원 및 장외발매소 출입기록, 마권 구매 등 베틀내역, 제세환급금 등 거래내역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경마 시행일은 주 3일(금·토·일요일)이며 1일 최대 17개 경주 개최. 1개 경주당 최대 10만원 베틀 가능

3. 판단

가. 한국마사회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감사원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한국마사회가 고객 관리 등을 위하여 수집·보유 중인 ‘입장권을 전자카드 서비스를 통해 구매한 자의 경마공원 및 장외발매소 출입 내역, 입장권을 장외발매소에서 현장 구매하고 좌석을 예매한 자의 장외발매소 출입 내역, 마권을 전자카드 서비스를 통해 구매한 자의 마권 구매 등 베틀내역과 제세환급금 등 거래내역’ 중,

–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자의 ‘경마공원 및 장외발매소 출입기록, 마권 구매 등 베틀내역, 제세환급금 등 거래내역 정보’(이하 통칭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감사원의 감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함

○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등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1)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다른

법률에 목적 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업무의 목적·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면 이에 포함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등 참고)

○ 감사원법은 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은 감사원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개별 개인정보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 감사원이 회계 및 결산의 검사·감독, 직무감찰 등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 대상기관의 임직원 등 개인에 관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 장부 등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됨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점,

- 우리 위원회는 감사원법 제27조 제1항과 규정 형식 및 내용이 사실상 동일한 같은 법 제50조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4. 27. 2022-107-016호 결정 등 참고), 감사원법 제27조에 따른 감사원의 자료요구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관한 사례 중 하나로 안내해온 점(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121면 참고),

- 법제처에서도 “감사원법에 따른 자료제공요청 규정은 감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규정이고, 업무협조 차원의 일반적인 자료제공요청 규정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2019. 4. 18. 제18-0798호 참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감사원법 제27조 제1항 제2호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함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침해가 부당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1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3) 소결

- 한국마사회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감사 대상자의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감사원법 제27조에 따라 감사원에 제공할 수 있는바,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실익이 없으므로 별도로 검토하지 아니함

나. 한국마사회가 감사원에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 한국마사회가 감사원에 특정인 또는 특정 공공기관 종사자가 ‘소속 기관의 휴무일(토·일요일)’에 경마공원 및 장외발매소 출입·베팅한 정보, ‘감사원법에서 규정한 감사대상기관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가 아닌 일반인(민간인)’의 본 건 개인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서,
 - 이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명확한지, 개별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지, 해당 개인정보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있는지 등을 고려하고, 관련 사실관계, 해당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예상되는 결과 등에 비추어 개인정보처리자가 1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 따라서 한국마사회는 본 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감사원과의 긴밀한 소통 등을 거쳐 감사원이 각 정보항목을 처리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과 이로 인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예측하고,
 - 이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가 감사원법 등 개별법의 입법 목적·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자료 제출의 타당성 및 그 자료에 포함할 개인정보(항목)의 범위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08-014호
안 건 명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의 형 집행 업무를 위한 우정사업본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 청 인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장
의결연월일 2024. 5. 8.

주 문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은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형집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최근 1년 기간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으로, 자유형 미집행자의 부모·형제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대상으로 제한하여 우편물을 주고받은 자의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5월 8일

위 원 장	조 소 영
위 원	윤 영 미
위 원	이 문 한

[별지]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따라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하고
 - 재판을 집행하는 검사는 같은 법 제473조에 따라 자유형 등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형 집행을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하고,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하며,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음
- 수원지방법검찰청안산지청(이하 ‘안산지청’)은 2022. 2. 구금되지 않은 피고인이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소환 전에 이미 도망하여 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 형집행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하는 한편, 가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아 추적 조사하는 등 거주지 탐문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안산지청은 안산우체국으로부터 최근 1년간 자유형 미집행자의 부모·형제와 우편물을 주고받은 자의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주소지를 탐문하거나 해당 휴대전화번호 가입자가 자유형 미집행자와 관련있는 자로 의심되는 경우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의 주변을 탐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유형 미집행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구인하고자 함
- 한편, 「우편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같은 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우편역무의 제공 등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조 제6호의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서 우편
역무 등 대국민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에서는 안산지청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함

나. 질의내용

- 안산지청이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형 집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접수·배달 및 우편배달 사전안내 서비스 등 우편역무
제공을 위하여 우편물 수신인 또는 발신인의 주소·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이용
하고 있는바, 우정사업본부가 본 건 개인정보를 안산지청의 형 집행 업무를 위해
제공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고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가.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 및 제473조에 따라 재판을 집행하는 검사는 자유형 등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형 집행을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하고, 자유형 등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하는바
 - 현재지를 알 수 없는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구인을 위해 검찰에서는 출입국 조회, 출국금지조치, 지명수배 및 소재파악을 위한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본 건의 자유형 미집행자는 불구속 피고인의 신분으로 2022. 2.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소환 전에 도망함에 따라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구인이 필요하고
 - 안산지청은 형집행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하는 한편, 가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아 추적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탐문을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안산지청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주소지를 탐문하거나 해당 휴대전화번호 가입자가 자유형 미집행자와 관련있는 자로 의심되는 경우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의 주변을 탐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유형 미집행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구인하려는 것인바
 - 안산지청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자유형 미집행자를 구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

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형벌은 범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의 의미에 그치지 않고 형벌의 위하를 통한 사회 일반의 규범의식 강화 및 범죄인의 사회격리와 재사회화를 통한 범죄의

예방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 이러한 형벌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형의 집행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므로 본 건 개인정보의 처리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중한 것으로 보이고

-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을 통해 자유형 미집행자의 부모·형제 및 그들과 우편물을 주고받은 상대방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나
 - 안산지청은 우편물 수신인 또는 발신인의 성명 등을 제외하고 자유형 미집행자의 소재 수사에 필요한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로 한정하여 제공받고자 하고, 명절 등의 경우에는 특히 가족 간에 우편물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수발신 기간을 최근 1년 동안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 안산지청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자유형 미집행자의 구인을 위한 소재 파악에 이용하고자 할 뿐이고, 정보주체나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 우정사업본부가 본 건 개인정보를 안산지청에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 검토 결과

- 안산지청은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형 집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필요 최소한의 기간과 대상으로 제한하여 제공받을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09-015호
안 건 명 경상남도의 자체감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 청 인 경상남도지사
의결연월일 2024. 5. 22.

주 문

경상남도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확인 목적으로 감사 대상 기간 동안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한 소속 공무원의 성명, 청사 출입 시각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5월 22일

위 원 장 조 소 영
위 원 윤 영 미
위 원 이 문 한

[별지]

1. 질의배경

- 경상남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감사 기구인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 한편, 경상남도 회계과는 '21.8월부터 「경상남도 청사 출입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청사의 안전과 방호 목적으로 출입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 제20조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공무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21.8월부터 출입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의 성명, 청사 출입 시각을 요청하였음
- 이에, 경상남도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확인 등 자체감사 목적으로 출입관리 시스템에 저장된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의 성명, 청사 출입 시각을 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가능한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경상남도가 소속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확인 등 공공감사법 제20조에 따른 자체감사 목적으로 출입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소속 공무원의 성명, 청사 출입 시각(이하 “본 건 개인정보”)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경상남도가 자체감사 목적으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경상남도가 청사의 안전 및 방호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자체감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다른 법률에 목적 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업무의 목적·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면 이에 포함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등 참고)

-
-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은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출석·답변의 요구’(제1호),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제2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제3호),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제4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2호는 감사기구의 자료 제출 요구권과 감사 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의 자료 제출 의무는 규정하면서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 감사기구의 장이 공공감사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확인 등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진실성, 객관성, 충분성의 확보가 필수적인 점,
 - 동조 제3항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감사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점,
 - 우리 위원회는 해당 조문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여러 번 의결하였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6. 7. 11. 제2016-11-19호 결정; 2021. 4. 14. 제2021-106-011호 결정 참고),
 - 해당 조문과 형식 및 내용이 유사한 「감사원법」 제27조 제1항 제2호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점(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5. 8. 제2024-108-013호 결정 참고) 등에 비추어 볼 때,
 -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2호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2) 본 건 개인정보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 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衡量하여 판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11.12. 제2018-23-268호 결정 등 참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해당 점검을 통해 부당 지급액을 환수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임
-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는 “지방공무원에게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를 점검”하는 등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은 경상남도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확인 목적으로 본 건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의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나,
 - 감사 대상 기간동안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하지 않은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확인 목적으로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해당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경상남도가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확인 목적으로 감사 대상 기간동안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한 소속 공무원의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09-016호
안 건 명 경상남도의 체납차량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도내 시·군 보유 차량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 청 인 경상남도지사
의결연월일 2024. 5. 22.

주 문

경상남도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이동동선을 분석하고 위치정보를 추정하여 도내 시·군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내 시·군으로부터 차량정보(차량번호, 통과일시, 식별자)를
제공받을 수 없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5월 22일

위 원 장	조 소 영
위 원	윤 영 미
위 원	이 문 한

[별지]

1. 질의배경

- 시·군에서 운영 중인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을 활용하여 광역 단위로 체납차량 이동 동선을 분석하여 체납세관련 부서에 제공하여 체납세 징수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함
- 경상남도 관내 시·군에서 차량번호 정보 수집
 - 경상남도 시·군에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도내 전역 1,370여대 설치)를 통해 차량정보(차량번호, 차량번호 스티킷(사진), 식별자, 통과일시 등) 수집
 - 경찰청 수배차량 조회시스템과 연계하여 수배차량 및 수사 중인 차량정보(차량번호, 차량번호 영상(사진), 식별자, 통과일시 등)를 경찰청에 제공
- 경상남도 관내 18개 시군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징수에 애로
- 체납세관련 부서에서 체납차량 번호를 데이터허브(데이터허브 플랫폼내 별도 체납차량 분석 서비스 구축 예정)를 통해 시·군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에 조회 요청
 - 시·군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차량정보(차량번호, 식별자, 통과일시)를 활용하여 시·분 단위로 데이터 분석,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주 가는 대략적인 지역(장소) 추정 정보 제공
 - ※ 특정 지역에 자주 가는 요일/시간대 등을 분석
 - 자주 가는 위치 정보와 체납세관련 부서 보유 자료와 결합하여 체납차량이 자주 가는 위치(장소), 시간을 특정하여 세금 징수(자동차번호판 영치)에 활용

2. 질의내용

- 시·군에서 수집·보유한 차량정보(차량번호, 통과일시, 식별자)를 체납세 징수에 활용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경상남도에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체납차량 이동동선을 분석한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경상남도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군 CCTV 관제센터는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해당 CCTV로부터 수집된 체납차량의 차량정보를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에 활용하기 위한 이동동선 분석의 목적으로 경상남도에 제공하는 것은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경상남도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이동동선을 분석하여 위치정보를 시·군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군 CCTV 관제센터로부터 체납차량의 차량정보(차량번호, 통과일시, 식별자)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개인정보위 2022. 5. 25. 제2022-109-020호 결정 참조)

-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자동차세의 과세권은 시·군에 있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은 시장·군수가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 도지사에게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를 요청할 수 있고 제3항은 도지사는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 도지사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를 위해 차량번호를 제공받는 것 이외에 자동차가 등록된 시·군이 아닌 타 시·군으로부터 체납차량의 통과일시, 식별자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다.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경상남도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이동동선을 분석하여 위치정보를 시·군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군 CCTV 관제센터로부터 체납차량의 차량정보(차량번호, 통과일시, 식별자)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그 수집목적 외로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 (개인정보위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1)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에 활용하기 위한 체납차량의 이동동선 분석 및 위치정보 제공이 경상남도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은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가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신규등록에 관한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음
 -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28조 제2항은 시장·군수는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하고,

제133조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독촉절차 없이 즉시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관련 조항을 종합해보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 영치 업무의 권한은 시장·군수에 있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 영치를 위해 체납차량의 이동동선을 분석하고 위치정보를 시·군에 제공하는 것이 경상남도의 소관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움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명확한지, 개별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지, 해당 개인정보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 개인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衡量하여 판단해야 함
- 정보주체의 자동차세 체납이라는 범위반 사실이 있고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보 및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체납세를 징수해야 하는 공익도 고려하여야 하나,
 - 경상남도가 체납차량의 이동경로를 추적·분석하여 정보주체의 위치정보를 추정·제공하는 행위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이동경로·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되므로,
 - 개인정보 제공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는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10-017호
안 건 명 영월교도소의 도주한 수용자 체포를 위한 영월군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 청 인 영월군수
의결연월일 2024. 6. 16.

주 문

영월군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영월교도소가 도주한 수용자 체포에 이용하기 위해 요청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개인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6월 16일

위 원 장	조 소 영
위 원	윤 영 미
위 원	이 문 한

[별지]

1. 질의배경

- 영월교도소 CCTV는 교도소 내부만 촬영하기 때문에 수감자가 탈옥하여 도주했을 때에는 동선파악의 한계가 있어 수감자 탈옥 시 군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탈옥수를 신속하게 체포하기 위해 사전에 영월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하는 탈옥수 개인영상정보를 영월교도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함

2. 질의내용

- 영월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방범용, 어린이보호용, 재난관리용, 시설물관리용, 주정차단속용, 쓰레기투기단속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 5, 9호에 따라 탈옥수 체포 업무를 목적으로 영월교도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월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범죄 예방, 시설 안전, 교통단속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 영월교도소가 도주한 수용자 체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영월군이 CCTV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
- 제1호에서 제3호, 제6호에서 제10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제2호 및 제9호를 우선하여 검토함(개인정보위 2024. 1. 24. 제2024-102-002호 결정 참조)

다.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위 2023. 12. 13. 제 2023-118-038호 결정 참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103조 제4항에서 여관·역 등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수용자의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고 제4항의 ‘협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영상정보 제공이 포함된다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으므로 형집행법 제103조 제4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는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보호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 의해 사람을 구금하는 시설인 교도소의 목욕실, 화장실 등에는 그 안에서의 자해·자살, 폭력, 탈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이는 교도소 내부만을 촬영하고 있고 수용자가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체포를 위한 다른 수단이 필요함
- 형집행법 제103조 제2항은 도주한 사람의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제4항은 체포를 위해 필요한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도주한 수용자의 이동경로나 출입 장소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어서 한계가 있고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영월군 CCTV 통합관제센터의 개인영상정보는 도주한 수용자의 실시간 이동경로나 출입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도주 후 72시간 이내에만 체포할 수 있는 교도관에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도주한 수용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영월교도소가 영월군 CCTV 통합관제센터로부터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은 것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에서 말하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
 - 이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공받을 수 없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10-018호
안 건 명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폐교대학 교직원 증명 발급 업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 청 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의결연월일 2024. 6. 16.

주 문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폐지·폐쇄된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증명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퇴사일을 알 수 없는 교직원의 성명·생년월일·직장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교직원이 폐지·폐쇄된 학교의 교직원으로 사용된 날과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일자를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해당 교직원이 폐지·폐쇄된 학교에 임용된 날과 퇴직한 날의 일자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6월 16일

위 원 장 조 소 영

위 원 윤 영 미

위 원 이 문 한

[별지]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를 폐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 「사립학교법」 제48조의2 제1항은 폐지·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라 폐지·폐쇄된 학교(이하 ‘폐교대학’)는 학적부 및 조직·회계·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4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제출받은 기록물을 재단에 이관하고 있음
- 한편, 재단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8항 제4호에 따라 폐교대학의 학적부 관리·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 최근에 폐쇄된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에 관한 기록물을 이관받아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교직원의 인사기록 중 입·퇴사일이 누락된 경우들이 발견됨에 따라
 - 그 중 일부는 이관받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정보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가입 정보를 통하여 입·퇴사일을 확인하고 증명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나머지의 경우에는 이관받은 기록물만으로는 입·퇴사일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해당 교직원에 대한 경력증명서 등의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재단은 폐교대학의 교직원에 대한 증명 발급 업무를 위하여 입·퇴사일을 알 수 없는 교직원의 성명·생년월일·직장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에 제공하고, 해당 교직원의 입·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각 공단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함

나. 질의내용

- 재단이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증명 발급 업무를 위하여 입·퇴사일을 알 수 없는 폐교대학 교직원의 성명·생년월일·직장명을 건보공단 및 사학연금공단에 제공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해당 교직원이 폐교대학의 교직원으로 사용된 날과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일자(이하 '건보공단 보유 입·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그리고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해당 교직원이 폐교대학에 임용된 날과 퇴직한 날의 일자(이하 '사학연금공단 보유 입·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재단이 입·퇴사일을 알 수 없는 폐교대학 교직원의 성명·생년월일·직장명을 건보공단 및 사학연금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재단은 「사립학교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폐교대학의 기록물을 교육부로부터 이관받아,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8항 제4호에 따른 학적부 관리·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 재단이 폐교대학 교직원의 성명·생년월일·직장명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을 교육부로부터 이관받은 것은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 재단이 입·퇴사일을 알 수 없는 폐교대학 교직원의 성명·생년월일·직장명을 건보공단 및 사학연금공단에 제공하는 것은 이들 기관으로부터 입·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교직원에 대한 경력증명 등의 발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므로, 이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재단은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증명 발급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입·퇴사일을 알 수 없는 폐교대학 교직원의 성명·생년월일·직장명을 건보공단 및 사학연금공단에 제공할 수 있음

나. 재단이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증명 발급 업무를 위하여 건보공단으로부터 건보공단 보유 입·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사학연금공단 보유 입·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의 자격 관리·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경우 적용대상사업장 및 해당 사업장에의 입·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 사학연금공단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의 업무를 위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의 입·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는바
- 건보공단과 사학연금공단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폐교대학 교직원의 입·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재단의 해당 교직원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고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1) 재단의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증명 발급 업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7-210호(2018. 1. 18.), 제2019-13-211호(2019. 7. 8.) 참조]
-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8항에서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학교의 학적부 관리·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재단의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증명 발급 업무는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8항에 따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함

2) 재단이 건보공단으로부터 건보공단 보유 입·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사학연금공단로부터 사학연금공단 보유 입·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서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01-06호(2017. 1. 9.) 참조]
- 재단은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증명 발급 업무로서 경력증명서·보직수행확인서 등의 각종 증명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경력증명 등의 발급을 위해서는 근무기간·근무연수 등의 정보가 필요하고
 - 이관받은 폐교대학의 인사기록으로는 교직원의 입·퇴사일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한 경력증명서 등의 발급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 해당 교직원의 입·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할 것임
- 또한, 재단이 이관받아 관리하는 기록물은 학교법인이 파산하거나 대학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폐교된 대학의 기록물로서, 이관받은 기록물에 교직원의 입·퇴사일에 관한 인사기록이 누락된 경우 등에는 다른 인사업무에 있어서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 이 경우 건보공단에 신고된 해당 교직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 기간이나 사학연금공단에 신고된 사학연금 가입기간도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워 어느 하나의 정보만으로 입·퇴사일을 정하는 경우 잘못된 내용의 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바
- 증명서 발급에 요구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고려할 때, 보다 정확한 입·퇴사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 보유 입·퇴사일에 관한 정보와 사학연금공단 보유 입·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비교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 재단이 건보공단과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재단이 건보공단으로부터 건보공단 보유 입·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그리고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사학연금공단 보유 입·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재단은 건보공단과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입·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입·퇴사일이 누락된 교직원의 인사기록을 관리하고 이를경력증명 등 증명발급 업무에 이용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재단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해당하고
- 경력증명 등의 입·퇴사일에 관한 증명 발급이 필요한 정보주체에게는 재단이 입·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비로소 증명발급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는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 할 것임
- 따라서 재단이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경력증명 등 증명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보공단과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4) 소결론

- 재단은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증명 발급 업무를 위하여 건보공단으로부터 건보공단 보유 입·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그리고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사학연금공단 보유 입·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다. 검토 결과

- 재단은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증명 발급 업무를 위하여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입·퇴사일을 알 수 없는 교직원의 성명·생년월일·직장명을 건보공단 및 사학연금공단에 제공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건보공단으로부터 건보공단 보유 입·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그리고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사학연금공단 보유 입·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11-019호
안 건 명 범죄 예방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내 모니터 설치 및 CCTV 영상 송출에 관한 건
신 청 인 인천광역시 동구(만석동장)
의결연월일 2024. 6. 26.

주 문

인천광역시 동구는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하여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에 영상 송출용 모니터를 설치할 수 있고 이 모니터를 통하여 같은 센터 내부에 설치·운영 중인 CCTV로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 송출할 수 있으나 같은 센터 외부에 설치·운영 중인 CCTV로 촬영한 영상은 송출할 수 없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6월 26일

위 원 장	조 소 영
위 원	윤 영 미
위 원	이 문 한

[별지]

1. 질의배경

-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인천 동구’)는 범죄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내부’(민원실 및 상담실)에 CCTV를 총 3대*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CCTV가 노후되어 새 기기로 교체하면서 같은 센터 ‘외부’에도 CCTV를 2대 신규 설치·운영하고자 함

* 민원실에 2대, 상담실에 1대(단, 민원실과 상담실은 투명 유리로 된 칸막이 사이로 접해있어 서로 들여다볼 수 있음)

- 또한, 인천 동구는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내부의 출입제한구역에 관제용 모니터 1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센터 내 민원실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상 송출용 모니터 1대를 추가 설치하고 이 모니터를 통해 센터 내·외부의 CCTV로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 송출하여 CCTV 촬영 중임을 인지하고 행동하게 함으로써 범죄 예방, 시설안전 등 효과를 높이고자 함

2. 질의내용

- 인천 동구가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하여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에 영상 송출용 모니터를 설치하고, 이 모니터를 통해 같은 센터 내·외부에 설치·운영 중인 CCTV로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 송출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인천 동구가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하여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에 영상 송출용 모니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제1호),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제3호) 등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1) 영상 송출용 모니터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는지

○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제25조의 규제가 적용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의 하나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규정하고 있는데,

– 폐쇄회로 텔레비전에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는 장치’ 및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가목),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나목)가 포함됨

○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2020. 10.)은 “영상을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촬영된 정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도 영상정보처리 기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음(28~29면)

○ 따라서 본 건의 ‘영상 송출용 모니터’는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송출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보호법 제25조 및 제2조 제7호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함

2)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지

○ 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공개된 장소’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를 의미함

○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지는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배·관리 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등 참고),

–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2020. 10.)은 “관공서의 민원실, 기업 건물의 로비 등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설치된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보호법 제25조의 적용을 받는다”면서, ‘관공서의 민원실’을 공개된 장소로 설명하고 있음(185면 사례4)

- 따라서 본 건에서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은 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공개된 장소’에 해당함

3)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하여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에 영상 송출용 모니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 인천 동구는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인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에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영상 송출용 모니터를 설치할 수 있음

- 다만, 본 건의 모니터는 민원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출입 제한 또는 통제된 구역에 설치·운영되어 관제 요원 등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만 볼 수 있는 모니터와는 구분되므로, 본 건 모니터를 통해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함

나. 인천 동구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에 설치한 영상 송출용 모니터를 통해 같은 센터 내·외부의 CCTV로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 송출할 수 있는지 여부

1) 모니터를 통한 영상 송출이 개인정보의 ‘제공’과 ‘이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은 제7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2020. 10.)은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106면)

가)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 모니터를 통해 센터 ‘내부’의 CCTV로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경우

- 본 건에서 행정복지센터 내부(민원실 및 민원실에서 투명 유리 칸막이를 통해 들여다 볼 수 있는 상담실)에 설치·운영 중인 CCTV로 촬영한 영상을 같은 센터 내 민원실에 설치한 모니터를 통해 송출하는 것은 점유하는 공간적 범위를 같이 하는 자들이 서로의 개인영상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 이 경우 모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가 모니터로 나타나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촬영 및 송출된 영상을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것과 근처에 있는 사람을 육안으로 직접 보는 것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신의 모습이 모니터로 나타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는 그 즉시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통제할 수 있으므로
 - 개인영상정보의 지배·관리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할 수 없어 개인정보의 제공이 아닌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나)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 모니터를 통해 센터 ‘외부’의 CCTV로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경우

- 본 건에서 행정복지센터 ‘외부’에 설치·운영 중인 CCTV로 촬영한 영상을 같은 센터 내 민원실에 설치한 모니터를 통해 송출하는 것은 센터 외부에 있는 사람에 관한 개인영상정보를 센터 내 민원실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 이 경우 해당 영상에는 민원인 등 센터 내부로 들어오려는 자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 단순 통행인 등 센터 외부에 일시적으로 머무르거나 지나가는 자의

모습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개인영상정보의 정보주체와 센터 내 민원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자들이 공간적 범위를 같이 하거나 어떠한 이해관계가 갖는다고 볼 수 없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가 모니터를 통해 송출되거나 제3자가 볼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식하기도 어려운바

- 개인영상정보의 지배·관리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 영상정보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개인정보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2) 모니터를 통하여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지

가)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 모니터를 통해 센터 ‘내부’의 CCTV로 촬영한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지

- 본 건에서 인천 동구는 범죄 예방, 시설안전을 위하여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내부에 설치·운영 중인 CCTV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범죄 예방, 시설안전 등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같은 센터 내 민원실 모니터를 통해 송출하고자 하는바, 이는 개인 영상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이용하는 것으로서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허용됨

나)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 모니터를 통해 센터 ‘외부’의 CCTV로 촬영한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지

- 본 건에서 인천 동구가 범죄 예방, 시설안전을 위하여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외부’에 설치·운영 중인 CCTV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범죄 예방, 시설안전 등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같은 센터 내 민원실 모니터를 통해 송출하는 것은 개인영상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함
-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2020. 10.)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199면),

-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범죄 예방 또는 시설안전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자치 사무로서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공공기관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7. 10. 제2017-15-124호 결정 참고)

- 다만, 본 건에서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외부에 있는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모니터를 통하여 센터 내 민원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제공은 허용될 수 없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11-020호
안 건 명 강릉시의 급수 중단·제한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 청 인 경상남도지사
의결연월일 2024. 6. 26.

주 문

강릉시는 급수가 중단·제한되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해당 지역 시민들에게 문자로 안내하기 위하여 연락처 및 주소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6월 26일

위 원 장 조 소 영
위 원 윤 영 미
위 원 이 문 한

[별지]

1. 질의배경

- 강릉시는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38조,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제1항에 따라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강릉시 조례”)를 제정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도시설을 관리하고 있음
- 강릉시 조례는 ‘강릉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강릉시는 강릉시 조례 제18조 및 제22조 등에 따라 급수설비 사용개시(이하 “급수 개전”) 및 수도사용요금 부과 등을 위하여 시민들의 주소 및 연락처를 수집·이용하고 있음
- 한편, 상수관로의 노후화 및 통신, 가스, 도로공사 등의 사유로 상수관로가 파열되는 경우 급수가 중단되거나 녹물 등 오염수 발생으로 급수가 제한되어 다수의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겪게 되고,
 - 강릉시는 현재 급수가 중단·제한되거나 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황을 공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피해를 보게 되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 하고 있음
- 이에, 강릉시는 급수가 중단·제한되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지역 시민들에게 상황, 급수 중단·제한 예정 시각 및 복구 예정 시각 등을 문자로 안내하기 위하여 기존에 수집한 시민들의 주소 및 연락처를 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가능한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강릉시가 급수가 중단·제한되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해당 지역 시민들

에게 문자로 안내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주소 및 연락처(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

3. 판단

가. 강릉시가 급수가 중단·제한되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해당 지역 시민들에게 문자로 안내하기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 제3호에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두고 있음

1)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 내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강릉시가 급수 개전 및 수도사용요금 부과 등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도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급수 중단·제한 등 수돗물 공급이 불가능함을 시민들에게 문자로 안내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 내 이용에 해당함

나) 강릉시가 급수 중단·제한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것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정부조직법」 및 각 기관별 직제령·직제규칙, 개별 조직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사무 이외에 「주민등록법」, 「국세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령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과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등을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 3. 24. 제2021-105-009호 결정 참고)

○ 강릉시는 「수도법」과 「지방공기업법」 및 강릉시 조례에 따라 수도사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수도사업자로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시민들이 수도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의무가 있고,

- 강릉시 조례 제20조는 ‘시장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때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급수가 중단·제한되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인 강릉시가 이를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것은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업무’에 해당할 것임

다) 본 건 개인정보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도법」 제39조 제2항은 ‘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강릉시는 급수 중단·제한되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있으나,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강릉시에 시청 홈페이지가 아닌 현실적인 방법으로 안내하여 주기를 요청하고 있고,

- 강릉시가 문자로 안내하고자 하는 것은 갑자기 급수가 중단·제한될 때 시민들에게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급수 상황을 안내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각 상황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본 건 개인정보 이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12-021호
안 건 명 한전엠씨에스주식회사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한국전력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 청 인 한전엠씨에스주식회사 사장
의결연월일 2024. 7. 10.

주 문

한전엠씨에스주식회사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전기계량기 검침·전기요금고지서 송
달 등 전력서비스 현장 업무에 관한 대상 고객의 성명·연령·성별·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
호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7월 10일

위 원 장	조 소 영
위 원	윤 영 미
위 원	이 문 한

[별지]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음
-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법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호·제17조 제1항에 따라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 고객만족도 조사의 취지를 감안하여 부처주관 조사 대상기관(국민생활 밀접성이 낮고 소규모 기관인 경우)과 조사 제외 대상기관(주고객이 정부부처 공무원이거나 외국인으로 조사가 곤란한 기관)으로 정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한전엠씨에스주식회사(이하 ‘한전MCS’)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2021년에 기획재정부에 의해 ‘기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한전으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전기요금고지서 송달·계기 점검 및 관리·해지 및 재공급 업무·요금관련 안내 및 상담 등의 전력서비스 현장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바
 - 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한전MCS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포함시켜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음

-
-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 고객 중 표본을 추출하고 기획재정부가 선정한 조사 주관 업체와 조사 주관 업체가 선정하는 실사업체가 전화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설문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되므로
 - 이를 위해 조사 주관 업체는 2022년·2023년 만족도 조사 시 한전MCS에 고객의 성명·주소·휴대전화번호 등 설문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 한전MCS는 한전으로부터 전력서비스 현장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바
 - 수탁자의 지위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탁업무 수행 동안에 한전으로부터 이전받아 위탁업무에 이용하고 있을 뿐이고 이를 별도로 저장·보유하고 있지 않아
 - 조사 주관 업체에 만족도 조사에 필요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전하지 못하여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한전MCS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전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전력서비스 현장 업무에 관한 대상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함

나. 질의내용

- 한전MCS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전기계량기 검침·전기요금고지서 송달 등 전력서비스 현장 업무에 관한 대상 고객의 성명·연령·성별·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이하 ‘본 건 고객정보’)를 한전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 한전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공공기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고,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發電)·송전(送電)·변전(變電)·배전(配電)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전기사용계약의 체결, 전기요금의 청구 및 납부처리, 전기사용과 관련한 정보 제공, 고지사항 전달’ 등 전기사용계약과 관련한 서비스제공의 목적으로 본 건 고객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는바, 한전이 본 건 고객정보를 한전MCS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한전MCS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고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가. 한전MCS의 고객만족도 조사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7-210호(2018. 1. 18.), 제2019-13-211호(2019. 7. 8.) 참조]
- 공공기관운영법 제13조 제2항은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 기획재정부는 2021년에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한전MCS를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는 한편, 2022년에는 한전MCS가 전기검침·고지서 송달 등의 전력서비스 현장 업무를 국민에게 직접 제공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한전MCS는 공공기관운영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한전MCS의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함

나. 한전MCS가 한전으로부터 본 건 고객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서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 공공기관운영법 제13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는바
 - 기획재정부는 조사 주관 업체를 선정하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 주관 업체에 만족도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여 고객만족도 조사가 통합 실시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부터 고객만족도 조사를 의뢰받은 조사 주관 업체는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고객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전받아 전화 또는 방문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따라서 한전MCS가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사 주관 업체에 설문조사에 필요한 조사 대상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것이 필요한데

- 한전MCS는 한전으로부터 전력서비스 현장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탁업무 수행 동안에 한하여 한전으로부터 이전받아 이용하고 있을 뿐, 이를 별도로 저장·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 한전MCS가 한전으로부터 본 건 고객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전력서비스 현장 업무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사대상사업·표본 수조사 방법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 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수를 고려하여 만족도 조사에 필요한 표본 수를 객관적인 산술식에 따라 산출하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고객의 개인정보를 조사 주관 업체에 이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만족도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정보주체의 경우 설문조사 참여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는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 만족도 조사 결과가 미흡으로 평가된 공공기관은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등 공공기관이 조사 결과를 서비스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공익이 작지 않고, 이는 결과적으로 정보주체 및 제3자에 게도 이익이 된다 할 것이므로
 - 한전MCS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전으로부터 본 건 고객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라. 검토 결과

- 한전MCS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한전으로부터 본 건 고객정보를 보호법 제 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한전은 보호법 제1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본 건 고객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한전MCS에게 이용 목적·이용 방법·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 한전MCS는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고객만족도 조사 목적이 달성되어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하는 등 보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12-022호
안 건 명 경기도의 외국인 아동 입학안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 청 인 경기도지사
의결연월일 2024. 7. 10.

주 문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90일 이내에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체류지가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등록된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외국인 아동의 성명, 체류지 주소 및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7월 10일

위 원 장	조 소 영
위 원	윤 영 미
위 원	이 문 한

[별지]

1. 질의배경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 제17조 제1항에 ‘읍·면·동의 장은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취학의무 대상자가 아닌 외국인 아동은 읍·면·동이 작성하는 취학아동명부에 포함되지 않아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보호자가 취학통지를 받지 못하여 외국인 아동이 적절한 시기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이에, '23. 11. 13. 김포시는 관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학군, 예비소집일, 입학방법 등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기 위하여 체류지가 김포시로 등록된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외국인 아동의 성명, 체류지 주소 및 연락처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개인정보위에 심의·의결을 요청하였고, '90일 이내에서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고 의결한 바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3. 27. 제2024-106-008호 결정 참조)
- 상기 결정 이후, 경기도는 김포시뿐만 아니라 ‘외국인 아동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 도내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아동의 성명, 체류지 주소 및 보호자의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경기도 시·군’)가 관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학군, 예비소집일, 입학방법 등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90일 이내에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체류지가 경기도 시·군으로 등록된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외국인 아동(이하 ‘본 건 정보주체’)의 성명, 체류지 주소 및 보호자의 연락처(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경기도 시·군이 관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기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를 위하여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경기도 시·군이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입학안내를 하기 위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1) 경기도 시·군이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는 것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17조 제2항에 ‘읍·면·동의 장은 매년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입학할 학교와 입학기일을 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취학의무 대상자인 대한민국 국적 아동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17조에 따른 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을 신청'할 수 있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책무 규정을 두고 있고(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신청을 할 수 있고, 입학 가능한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대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 경기도 시·군이 초등학교 취학연령인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하는 것은 국내 공교육 제도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부족한 재한외국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할 것임

2)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위 2017. 1. 9. 제 2017-01-06호 결정 참조)
- 일반적인 제도 및 정책에 대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홍보·안내를 하는 경우 보도 자료 배포, 현수막 게시, 전광판 광고 등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 경기도 시·군이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가 국내 초등학교 입학 신청의사가 있음에도 해당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각 아동이 체류하는 곳에서 입학 가능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등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맞춤형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군·구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관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등록표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필요한 경우 특정 개인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
- 6세에 달하는 자를 추출하는 경우 국적, 생년월일, 체류자격 등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 이상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되고 이는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따라서 법무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고서는 경기도 시·군이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개인정보위 2018. 11. 12. 제2018-23-268호 결정 참조)

- 본 건 개인정보는 취학기인 외국인 아동에게 입학 가능한 학군 등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로 이로 인해 침해될 정보주체의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데 비해,

- 경기도 시·군이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입학 안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인 아동이 내국인 아동과 동일한 시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지역사회로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본 건 정보주체에게 수혜적인 복지사업에 해당함

- 또한, 경기도는 법무부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주체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초등학교에 입학할 가능성이 낮은 ‘90일 이내에서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을 제외하는 등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13-023호
안 건 명 함양군의 쓰레기 무단투기자 단속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신 청 인 함양군수
의결연월일 2024. 7. 24.

주 문

함양군은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방범용 CCTV로 수집한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영상정보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할 수 있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7월 24일

위 원 장	조 소 영
위 원	윤 영 미
위 원	이 문 한

[별지]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신청인/신청일 : 함양군수/2024. 3. 4.
- 함양군은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같은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 함양군의 소관 지역이 넓고 이미 완료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어려우며,
 - 상습적으로 쓰레기가 무단투기되는 지역의 주민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법 목적으로 설치한 CCTV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인근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파악·식별하여 투기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 * 방법용 CCTV 대수 : '24년 2월 현재 1,000여대
- 이에 함양군은 인근 주민에게 방법용 CCTV 영상정보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나. 질의내용

- 함양군이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함양군이 인근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함양군이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본 건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함양군이 방법 목적으로 수집한 CCTV 영상정보를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8조 제3항에 군수는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는 함양군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
- 함양군이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이미 완료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현실적인 대체수단이 없으므로 본 건 영상정보의 제공은 함양군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함양군이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 얻을 수 있는 환경보전과 국민생활 질적 향상의 공익은 본 건 영상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제공하여 제한되는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크고 과태료 부과는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제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함양군의 본 건 영상정보 목적 외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 1. 27. 의결, 제2021-102-004호 결정 참조)

나. 함양군이 인근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검토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는 함양군의 법령상 소관 업무에 해당하고
 - 함양군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투기자 식별 목적으로 인근 주민에게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인근 주민으로부터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개인정보)을 수집하는 것 또한 불가피하다 할 것임

-
- 따라서 함양군은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인근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할 수 있음

4. 검토결과

- 함양군은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본 건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집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13-024호

안 건 명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의 쓰레기 무단투기자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신 청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의결연월일 2024. 7. 24.

주 문

1.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는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방범용 CCTV로 수집한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영상정보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할 수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는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방범용 CCTV 영상 속 쓰레기 무단투기자가 탑승한 자동차의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7월 24일

위 원 장	조 소 영
위 원	윤 영 미
위 원	이 문 한

[별지]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신청인/신청일 : 제주특별자치도지사(행정시·읍·면)/2024. 4. 16.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같은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 제3항 및 별표3·별표4에 따라 과태료 부과 권한을 행정시 및 읍·면에 위임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의 소관 지역이 넓고 이미 완료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우며, 특히, 자동차 운행 중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하여 방법용 CC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는 쓰레기가 상습적으로 무단투기되는 지역의 주민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투기자의 인상착의 등이 영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방법 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로 수집된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인근 주민으로부터 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자 하고,
 - 자동차에서 무단투기**를 하는 경우에는 인근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자 확인이 어려우므로 본 건 CCTV 영상 속 투기자가 탑승한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공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투기자를 확인하고자 함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는 본 건 CCTV 영상 속 쓰레기 무단투기자로 추정되는 본 건 자동차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원인 사실 등의 사항을 사전통지를 하면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본 건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견이 제출되는 경우와 사전통지 후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본 건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을 경우에는 본 건 자동차소유자가 실제로 무단투기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임

* 방법용 CCTV 대수 : '24년 1월 현재 1만1천6백여대

** 자동차 운행 중 잠시 정차하여 차에서 외부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쓰레기를 투기한 후 다시 탑승하는 경우 등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는 인근 주민에게 본 건 영상정보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인근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본 건 자동차소유자에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나. 질의내용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가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인근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가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가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본 건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인근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1) 인근 주민에게 본 건 영상정보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가 방법 목적으로 수집한 CCTV 영상정보를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8조 제3항에 도지사는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쓰레기 무단 투기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이를 위임 받은 행정시·읍·면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함

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가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이미 완료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현실적인 대체수단이 없으므로 본 건 영상정보의 제공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의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 1. 27. 의결, 제2021-102-004호 결정 참조)

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가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 얻을 수 있는 환경보전과 국민생활 질적 향상의 공익은 본 건 영상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제공하여 제한되는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크고 과태료 부과는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제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의 본 건 영상정보 목적 외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 1. 27. 의결, 제2021-102-004호 결정 참조)

라) 소결론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는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본 건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할 수 있음

2) 인근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검토 가.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의 법령상 소관 업무에 해당하고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투기자 식별 목적으로 인근 주민에게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인근 주민으로부터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개인 정보)을 수집하는 것 또한 불가피하다 할 것임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는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인근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할 수 있음

나.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가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자동차등록원부(갑)의 자동차 관련 정보(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소유자 성명, 주소)를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에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는바,

- 이하에서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그 제공이 가능한지 검토함

가) 법률상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검토 가.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가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는 법률상 소관업무에 해당함

○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장 및 같은 법률을 소관하는 법무부 해석에 따르면 과태료는 ‘당사자’, 즉 해당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등에게 부과하여야 하는데, 쓰레기 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고,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은 과태료 부과 대상을 “(쓰레기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쓰레기를 실제로 버린 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바,

- 특정 자동차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자가 그 자동차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개인정보이지 쓰레기를 실제로 버린 자의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더라도 쓰레기를 실제로 버린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목적 외로 제공받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소결론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는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없음

2)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에서 행정청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의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나,
 - 검토 나. 1) 가)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가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더라도 쓰레기를 실제로 버린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4. 검토결과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는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본 건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인근 주민으로부터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집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는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성명·주소를,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본 건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13-025호
안 건 명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자체감사를 위한
소속 직원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건
신 청 인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결연월일 2024. 7. 24.

주 문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자체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부터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정보 중 성명, 생년월일, 법규위반 사항을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자체감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7월 24일

위 원 장	조 소 영
위 원	윤 영 미
위 원	이 문 한

[별지]

1. 질의배경

-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63조,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76조,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정관」(이하 ‘정관’)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임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상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공공감사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2조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법인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정관 제4조는 안성시가 공단의 자본금(2억원) 전액을 출자하도록 하였고, 정관 제8조 제2항 별표 2 및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이하 ‘직제규정’) 제10조 제1항 별표 1는 공단의 정원을 총 299명으로 정하고 있으며, 감사원은 공단을 ‘공공감사법 적용 대상기관’으로 지정 및 공고한바(공고 2024-14호)
 - 공단은 공공감사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감사법 제2조 제5호, 제5조 및 정관 제8조 제2항 별표 1, 직제규정 제11조 별표 2의 ‘자체감사기구’(감사 안전팀)를 설치하고, 공공감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이하 ‘감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자체감사를 수행하고 있음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에 대하여 임직원의 음주운전 여부를 주기적으로 자체점검하고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권고하였고(국민권익위원회 2016.12.19. 제2016-905호 결정 참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준법·윤리의식 및 품위유지 의무가 점점 더 강조됨에 따라

-
- 공단은 감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내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내규 등을 근거로 전직원으로부터 운전경력증명서에 포함된 성명, 생년월일, 법규위반 내역*(이하 통칭하여 ‘본 건 개인정보’)을 연 1회 제출 받고자 함

* ‘법규위반 내역’에는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무면허운전·속도위반(초과 속도범위)·교통사고 내역이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공단이 자체감사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의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공단이 본 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등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이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해당 법률에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집·이용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
- 공공감사법 제20조는 제1항에서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제2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그 소속 직원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 건과 기초 사실관계가 유사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체감사를 위한 소속 직원의 운전경력증명서 수집에 관한 건’에서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는 이유로 위 규정을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자체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부터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정보 중 성명, 생년월일, 법규위반 사항을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7. 13. 제2020-13-244호 결정)

○ 따라서 공단은 자체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나. 참고 사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 공단이 본 건 개인정보를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인바

- 공단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공공감사법 등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목적, 해당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등 이로 인하여 예상되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할 것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13-026호
안 건 명 춘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춘천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 청 인 춘천시장
의결연월일 2024. 7. 24.

주 문

춘천시는 춘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 및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춘천시 전입대학생 전입장려금 신청서’ 또는 같은 조례 제4조 제2항 및 별지 2호서식에 따른 ‘춘천시 집단전입 장려금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춘천시의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춘천시는 행정사무감사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개인정보에 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7월 24일

위 원 장	조 소 영
위 원	윤 영 미
위 원	이 문 한

[별지]

1. 질의배경

- 춘천시는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이하 ‘본 건 조례’) 제3조에 따라 전입대학생*(학기별 30만원, 최대 240만원), 유공 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3명 이상 시 1명당 20만원) 등에게 전입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 후 전입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학생으로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전입 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소속 구성원을 관내 전입시킨 후 6개월 이상 유지시킨 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 대학생전입 장려금 지원을 받으려는 전입대학생으로부터 본 건 조례 제4조 제1항 및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집단전입 장려금 지원을 받으려는 유공 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로부터 같은 조례 제4조 제2항 및 별지 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 위 각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참고] 전입장려금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항목

- (전입대학생)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전입일, 거주기간, 대학교명, 학과명, 학년, 은행명, 계좌번호, 거주형태(‘기숙사, 원룸·빌라 등, 기타’ 중 선택), 첨부서류(통장사본, 재학증명서,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유공 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소속 구성원) 직장구분(‘기관·단체·기업체, 군부대’ 중 선택), 각 구성원의 소속(직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입일자, 전화번호, 첨부서류(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전입자별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한편, 춘천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춘천시 전입장려금이 본 건 조례 제2조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지급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춘천시에 ‘2023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집행한 전입 장려금’에 관한 신청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음

○ 이와 관련, 춘천시는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의 ‘지방자치법령 해설 및 해석사례’ 등에 의하면 지방의회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기재된 개인정보를 (부분)삭제 하는 등 수정·편집하여야 하는데, 춘천시의회에서 제출 요구한 기간 동안 집행한 전입장려금의 신청서가 5,586부에 달하여 이를 모두 수정·편집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를 들어 춘천시의회에 제출 범위의 조정을 요청하였고,

- 춘천시의회는 해당 기간 집행한 전입장려금의 ‘신청서 원본’을 제출하면 감사 종료 후 이를 춘천시에 반납하겠다고 답변함

2. 질의내용

○ 춘천시가 춘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전입장려금 신청서 원본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춘천시의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춘천시가 춘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전입장려금 지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춘천시가 전입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춘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 외 제3자에게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등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1)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다른 법률에 목적 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업무의 목적·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면 이에 포함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등 참고)
-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제1항), 제1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4항)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제5항)
-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개별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에는 해당 감사의 대상자, 관련자 등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고, 본 건에서 춘천시의회가 춘천시에 요구하는 서류에는 전입장려금 지급의 적정성 등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즉 대학생전입 장려금을 지급받은 전입대학생, 집단전입 장려금을 지급받은 유공 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의 구성원 등이 춘천시에 거주한 기간 등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됨
 - 참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금천구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한 금천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등에서 “감사·조사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개인의 비위 사실이나 특혜 등 특정 개인과 관계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정확한 감사·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와 관계되는 자로부터 증언이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되는 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서류’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4. 12. 제2023-106-014호 결정 등 참조)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함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침해가 부당한 경우를 의미하고, 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1차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소결

- 춘천시는 춘천시의회에 행정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춘천시의회에 제공할 수 있는바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실익이 없으므로 별도로 검토하지 아니함

나. 춘천시가 춘천시의회에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 춘천시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각 신청서를 ‘원본 그대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범위 또는 구체적인 제공 방법에 관한 사항임

-
- 따라서 춘천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수집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의 제공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개인정보만을 적합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 그 과정에서, 춘천시의회의와의 긴밀한 소통 등을 거쳐 춘천시의회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이로 인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예측하고,
 -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행정사무감사 등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규정의 입법 목적·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할 개인정보(항목)의 범위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다.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를 위해 조치할 사항

- 보호법 제18조 제5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따라서 춘천시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춘천시의회에 그 개인정보를 행정사무감사 목적에 한하여 이용하게 하는 등의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14-027호
안 건 명 속초시의 재난대응 통합관제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 청 인 속초시장
의결연월일 2024. 8. 28.

주 문

속초시는 기상(예비)특보, 산불경보 중 1개 이상 발령 시 재난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8월 28일

위 원 장	조 소 영
위 원	윤 영 미
위 원	이 문 한

[별지]

1. 질의배경

- 속초시는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통합관제체계를 마련하고, 산불·폭설·침수 등 주요 재난에 대한 의사결정과 상황판단 지원을 위한 행정활용 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 '19. 4. 4.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과 '21.12.25. 속초에서 발생한 적설량 55cm 폭설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산불 및 기상상황 등으로 인한 재난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신 정보통신(ICT) 기술을 적용한 상시 재난 대응체계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속초시(민원토지과)는 기상(예비)특보, 산불경보 중 1개 이상 발령 시 재난관리 업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활용한 상시 통합관제체계에 속초시(재난대응과)에서 운영중인 CCTV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질의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속초시는 기상(예비)특보와 산불경보 중 1개 이상 발령 시 재난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속초시(재난대응과)에서 운영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다음의 안전대책 방안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디지털트윈 플랫폼 기반의 재난대응 통합관제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 가. 속초시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CCTV 통합관제 센터의 영상정보를 디지털트윈 플랫폼 기반의 재난대응 통합관제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속초시에서 범죄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 등의 목적으로 운영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재난대응 통합관제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제10호) 등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음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제1호에서 제3호, 제6호에서 제10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본 건은 제10호를 제5호에 우선하여 검토함(개인정보위 2024. 1. 24. 제2024-102-002호 결정 참조)

1)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0호의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경우’란 감염병, 전쟁, 천재지변, 긴급재난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평온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상당할 때 이를 방지하거나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위 2024. 1. 24. 제2024-102-002호 결정 참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화재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 「기상법」 제2조 제10호에서 “특보”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서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강수량, 온도, 풍속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보를 하여야 하고, 특보가 예상되고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예비특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와 별표1에서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고, 특보의 대상이 되는 기상현상(호우, 대설, 태풍, 강풍, 황사, 건조, 한파, 폭염, 풍랑, 폭풍해일)과 특보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예보업무규정」 제19조 제3항에서 예보관서 장은 강수량, 온도, 풍속 등의 기상 요소가 특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어도 지리적 또는 지역적 특성으로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보를 발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상청이 특보를 발령하였다는 것은 특정지역에 중대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산림보호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와 별표 1의9에 따라 산림청장은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되는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산불경보가 발령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입산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림청장은 산불재난 위기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수준에 따라 산불경보를 발령하되,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심각의 산불경보를 발령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산불경보발령 시에는 산불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산불경보를 발령하였다는 것은 산불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너목은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예시하고 있음

- 속초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따라서, 속초시가 본 건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기상(예비)특보 및 산불경보 발령 시 재난 위험지역을 확인하고 위험·취약 요소 발견 시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 주민대피 등을 통해 인명피해 등을 사전 예방하고 재난 피해발생시 긴급대응·복구 등 신속한 현장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인 점,

- 기상청의 기상(예비)특보와 산림청의 산불경보 발령은 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발령된다는 점,

- 재난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재난 대응·복구 등의 재난관리 업무 수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하면,

- 기상(예비)특보 및 산불경보 발령 시 속초시가 본 건 CCTV 영상 정보를 이용하여 실시간 상황 확인을 통해 재난 위험 요소를 사전 예방하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상이변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면서 정확한 기상예보가 어려워지고 있고, 단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의 위험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시민들에게 대피 안내를 하는 등 긴급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기상청은 기상특보 발표가 예상될 때 이를 사전에 알려 대비하게 함으로써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기상예비특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산불발생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 필요시 취약지 감시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산불경보 ‘관심’ 단계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면,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기상예비특보’와 산불경보 ‘관심’ 단계부터 CCTV 영상정보를 확인하여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기상특보 등이 발령된 경우 재난대책 수립·집행 등 재난관리 업무를 위해서는 재난상황의 위험성과 심각성 등 재난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취약시설·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 주민대피 등 피해예방과 긴급대응 등 신속한 현장조치가 가능할 것임

- 따라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재난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시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상(예비)특보 및 산불경보 발령 시 현장을 CCTV 영상정보를 통해 실시간 확인하는 것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개인정보위 2018. 11. 12. 제2018-23-268호 결정 참조)

- 속초시가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것은 기상(예비)특보 및 산불경보가 발령된 경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공익적 목적이 큰 점,

-
- 사람이나 차량번호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없도록 화면 크기를 고정 하거나 저화질로 처리하고, 사용자별로 업무 권한을 부여하고, 화면 캡처 제한 등을 통해 업무 외에는 활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안전대책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를 최소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건 영상정보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본 건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14-028호

안 건 명 경수고속도로(주)의 운행제한차량 단속을 위한 한국도로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 청 인 경수고속도로(주) 대표이사

의결연월일 2024. 8. 28.

주 문

1. 경수고속도로(주)는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해당 차량 소유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유료도로관리권자와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도로법」 제1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운행제한차량 단속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적재량 초과 차량의 운행은 인명피해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관리권자 및 한국도로공사가 운행제한차량에 대한 단속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8월 28일

위 원 장	조 소 영
위 원	윤 영 미
위 원	이 문 한

[별지]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도로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1호는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으로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차량의 폭이 2.5미터·높이가 4.0미터·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경우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하고(「도로법」 제7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단속장비의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차량을 운행하는 등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도로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4호)를 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됨(「도로법」 제115조 제5호)
- 경수고속도로(주)[이하 ‘경수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로서,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법」 제77조의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에 관한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바
 -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 적재량 측정장비를 설치하고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운행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회차(回車)나 운행중지 요구 및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재측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도로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차로를 이용하여 요금소를 통과한 경우에는
 -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고발 조치하는 것 외에,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나 재측정 요구 등의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한편,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도로 운영자로서 하이패스 이용 계약 체결 시 차량단말기 등록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차량 소유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 「도로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 따라 차량의 운행제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바
 - 하이패스 이용 고객의 운행제한 위반이나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 하이패스 이용 계약 체결 시 수집한 해당 차량 소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통행 위반 내역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단속업무에 이용하고 있음
- 이에 경수고속도로는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재측정 요구 등의 단속업무를 위하여 도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도로공사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고자 함

나. 질의내용

- 경수고속도로가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단속 업무를 위하여 도로공사가 차량 소유자의 하이패스 가입 시 수집한 해당 차량 소유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도로공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단,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로 한정)
-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이용 계약 체결 시 단말기 등록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하이패스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성명, 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단말기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해서는 단말기 등록 및 차종분류목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만을 받고 있는 등 도로공사가 정보주체로부터 받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 도로공사가 경수고속도로의 「도로법」 제7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업무를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경수고속도로에 제공하는 것은 본 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고
 - 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이하에서는 도로공사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경수고속도로에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함

가. 경수고속도로의 차량 운행 제한 업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이어야 하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7-210호(2018. 1. 18.), 제2019-13-211호(2019. 7. 8.) 참조]

- 「도로법」 제77조 제1항에서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운행제한 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도로법」 제77조 제8항은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제2항은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범위로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및 차량의 운행중지 요구 및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재측정 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경수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로서,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법」 제77조의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에 관한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바
 - 경수고속도로가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 재측정 요구 등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도로법」 및 「유료도로법」 관련 규정에 따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함

나. 경수고속도로가 도로공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서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01-06호(2017. 1. 9.) 참조]

○ 「도로법」 제77조 제4항·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경수고속도로는 차량의 운행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적재량 측정을 위한 차량의 유도 및 정차·차량의 제원 측정 및 운행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재측정 요구·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차량의 운행중지 요구’ 등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나

-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차로를 이용하여 요금소를 통과한 경우 등 적재량 초과 차량이 이미 요금소를 통과한 경우에는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고발 조치하는 것 외에는 해당 차량의 운행제한 여부에 대한 조사나 재측정 요구 등의 실질적인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도로에서 직접 운행제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원활한 통행의 유지 및 운행제한단속원의 안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경수고속도로가 도로공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경수고속도로는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적재량 측정 방해차량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의 통지 및 재측정 요구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바

- 이는 도로에서의 적재량 초과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도로 구조의 보전 및 사고 방지를 위한 것으로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의 침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라는 사익과 비교하여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인해 보호되는 공익이 더 중한 것으로 보이고
 - 경수고속도로는 적재량 측정 방해로 판단되는 차량에 한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므로 본 건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한 원인에는 정보주체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점
 - 경수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도로공사는 「도로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 따라 차량의 운행제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바, 하이패스 이용 고객의 운행제한 위반이나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 하이패스 이용 계약 체결 시 수집한 해당 차량 소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통행 위반 내역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휴대전화번호를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단속업무에 이용하고 있는 점
 - 경수고속도로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적재량 측정 방해차량 단속업무에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고발하는 것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이 경우 정보주체는 사전에 고발을 피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제공 받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경수고속도로가 도로공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업무에 이용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라. 결론

- 경수고속도로는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단속 업무를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도로공사로부터 제공할 수 있음
- 한편, 유료도로관리권자와 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제14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도로법」 제112조·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운행제한차량 단속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 적재량 초과 차량의 운행은 인명피해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관리권자 및 도로공사가 운행제한차량에 대한 단속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15-029호
안 건 명 검찰의 형 집행 업무 수행을 위한
한국도로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 청 인 한국도로공사사장
의결연월일 2024. 9. 11.

주 문

한국도로공사는 검찰의 형 집행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에 기재된 자 소유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면서 통과한 영업소(입·출구 톨게이트) 및 통과 일시에 관한 정보를 검찰에 제공할 수 있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9월 11일

위 원 장	조 소 영
위 원	윤 영 미
위 원	이 문 한

[별지]

1. 질의배경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처리 및 과·오납 분쟁처리를 위하여 「개인 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유료도로법」 제 21조의2에 따라 차량등록번호, 통과 영업소(입·출구 톨게이트), 통과 일시 등의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처리 및 과·오납 분쟁처리 과정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차적조회를 요청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는, 수사기관(검·경찰)이 피의자 등 소유 차량의 차량등록번호(및 차종)를 제공하고 해당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면서 통과한 영업소(입·출구 톨게이트) 및 통과 일시에 관한 정보의 회신(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13조 및 제215조 제2항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영장, 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및 관련 공문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나

- 검찰이 ‘형집행장’을 근거로 형집행장에 기재된 자 소유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면서 통과한 영업소(입·출구 톨게이트) 및 통과 일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경우 그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질의내용

- 한국도로공사가 검찰의 형 집행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에 기재된 자 소유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면서 통과한 영업소(입·출구 톨게이트) 및 통과 일시에 관한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9호에 따라 검찰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처리 및 과·오납 분쟁처리를 위하여 수집한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면서 통과한 영업소(입·출구 톨게이트) 및 통과 일시에 관한 정보’(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형사소송법」 제475조에 따른 검찰의 형 집행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9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다른 법률에서, 또는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 외 이용·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용·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
- 다만, 본 건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검찰의 형 집행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 또는 허용하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서는 이를 제공할 수 없음

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1)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따라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하는데

- 재판을 집행하는 검사는 같은 법 제473조에 따라 자유형 등의 선고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형 집행을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하고,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하며,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재판을 집행하는 검사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자유형 미집행자를 구인 하기 위하여 출입국 조회, 출국금지 조치, 지명수배 등 그 소재 파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특히, 본 사안의 경우 검찰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자유형 미집행자의 이동 경로나 소재 등을 파악하여 구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찰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자유형 미집행자 구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의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는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침해가 부당한 경우를 의미하고,

-
- 이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 형벌은 범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의 위하를 통한 사회 일반의 규범의식 강화 및 범죄인의 사회 격리와 재사회화를 통한 범죄 예방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형벌의 목적을 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의 집행에 이르러야 하는 점,

- 검찰은 본 건 개인정보를 자유형 미집행자의 이동 경로나 소재를 파악하여 구인하는 목적으로만 이용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이를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제한될 수 있는 자유형 미집행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권리보다 더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 한국도로공사가 본 건 개인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더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16-030호
안 건 명 특허청의 부정경쟁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등을 위한
플랫폼사업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 청 인 특허청장
의결연월일 2024. 9. 25.

주 문

1.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위한 목적으로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해당하는 플랫폼사업자로부터 플랫폼이용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2. 특허청이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진술·의견 청취 등을 위해서 연락·통지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야만 하는 경우,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등의 목적으로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 규정을 보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9월 25일

위 원 장	조 소 영
위 원	윤 영 미
위 원	이 문 한

[별지]

1. 질의배경

- 특허청(부정경쟁조사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및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 권고 등)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여부에 대한 행정조사와 시정권고(또는 시정명령 ('24. 8. 21. 시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정된 조사대상자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지만,
 -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공간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행위(유명브랜드 위조상품 판매,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으로 도용한 영리행위 등)의 경우 조사 대상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 파악이 어려워 조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 시정권고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
 - 특히, 디지털공간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명인 퍼블리시티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사건의 약 70%는 조사대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채 신고됨
- 이에 특허청은 조사대상자의 특징이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경쟁행위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플랫폼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특허청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행정조사, 시정권고·시정명령을 위한 목적으로 조사대상자 특징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플랫폼사업자로부터 플랫폼 이용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특허청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목적으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플랫폼사업자로부터 플랫폼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특허청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행정조사를 위해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조사대상 플랫폼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는데,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위 2023. 12. 13. 제2023-118-038호 결정 참조)

- 특별한 규정이 ‘법률’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이 시행령에만 있다면 제2호에 따른 목적 외 제공이 허용되지 않으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에 제공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위 2023. 2. 22. 제2023-103-006호 결정 참조)

○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 제1항은 특허청장이 부정경쟁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의 제출 요청, 출석 요청, 자문 및 진술 청취를 통해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할 수 있음

○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침익적인 강제조사로서 대상이 되는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4 제2항은 ‘당사자’에게 조사·검사 목적, 일시 및 방법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정 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특허청고시 제2024-13호) 제2조 제3항에서는 ‘제3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 조사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 제1항의 조사대상자는 ‘부정경쟁 등 행위자’이고,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포함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 제1항의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은 ‘부정경쟁 등 행위자’에 대한 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별개의 임의조사로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위임에 따른 조사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에 법률의 위임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특허청의 자료 제출 요청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따라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허청의 자료 제출 요청이 부정경쟁행위 조사 등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특허청에 제공될 수 있음을 예견하기도 어려울 것임

-
-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자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은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개인정보처리자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관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결론

-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 경쟁행위 행정조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위한 목적으로 ‘이해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해당하는 플랫폼사업자로부터 플랫폼이용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
- 한편, 특허청이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진술·의견 청취 등을 위해서 연락·통지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야만 하는 경우,
 -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등의 목적으로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 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 규정을 보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16-033호
안 건 명 중앙전파관리소의 불법무선국 운용 단속업무를 위한 해양경찰청 보유
어선 출입항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 청 인 중앙전파관리소장
의결연월일 2024. 9. 25.

주 문

중앙전파관리소는 무선국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지된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를 단속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단속 대상인 어선의 범위를 초과하는 모든 어선의 어선번호와 출입항 일시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7호에 근거하여 제공받을 수 없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9월 25일

위 원 장 조 소 영

위 원 윤 영 미

위 원 이 문 한

[별지]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전파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제19조, 제19조의2), 과기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 무선국을 운용할 수 있음(제25조)
 - 그리고 과기부장관은 시설자가 무선국의 개설 및 운용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고(제71조의2 제1항 제3호)
 - 「전파법」 제72조에 따라 시설자가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전파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등을 명할 수 있음
-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전파관리소’)는 과기부의 소속기관으로서 「전파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신고·준공검사 및 그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전파감시,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의 업무를 과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사법경찰 직무법’)」 제5조 제23호 및 제6조 제20호 가목에 따라 「전파법」 중 무선설비에 관한 범죄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음
- 「전파법」 제84조 제1호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데, 무선국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지된 경우 무선국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취소·폐지된 무선설비로 항행하는 어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 무선국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지된 경우 정기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조업 중인 어선의 무선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시 해상사고의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되므로
- 전파관리소는 「전파법」 제84조 제1호 위반으로 이를 적극 단속하고자 하나 이를 위해서는 무선국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지된 무선설비를 ‘운용’한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고
 - 전파관리소가 정박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조사나 수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무선국 시설자가 운용사실을 부인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만으로 운용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단속이 곤란한 실정임

○ 한편,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항포구에 출입항하는 모든 어선의 어선번호, 출입항 일시 등의 정보를 ‘어선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으므로

- 전파관리소는 해경으로부터 항포구를 출입항하는 모든 어선의 어선번호와 출입항 일시에 관한 정보(이하 ‘본 건 어선 출입항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무선국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지된 어선의 무선국(이하 ‘불법무선국’) 운용 여부를 확인하여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하고자 함

나. 질의내용

○ 전파관리소가 불법무선국 운용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경으로부터 본 건 어선 출입항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에 따라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해경)에 어선 소유자와 선장 및 승선원의 성명·주소·연락처 등의 인적 정보 및 어선번호와 해당 어선의 출입항 일시·장소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해경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라 이를 ‘어선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하고 있는바
 - 본 건 어선 출입항 정보는 해당 어선의 선장 및 승선원의 출입항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보로서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 해경이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어선의 안전한 조업 등의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어선 출입항 정보를 전파관리소의 불법무선국 단속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가. 전파관리소가 본 건 어선 출입항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범죄수사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여기서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검사, 사법경찰관리)의 활동을 의미함

○ 전파관리소는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23호 및 제6조 제20호 가목에 따라 「전파법」 중 무선설비에 관한 범죄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 전파관리소가 불법무선국 운용에 대한 단속 목적으로 증거 수집을 위해 해경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어선 출입항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수사활동에 해당함
- 다만,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므로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무선국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지되어 불법무선국 운용의 의심되는 어선의 출입항 정보를 초과하여 적법하게 무선국을 운용하고 있는 어선의 출입항 정보까지 포함하여 제공받는 것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전파관리소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를 근거로 본 건 어선 출입항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나. 전파관리소가 본 건 어선 출입항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전파관리소의 불법무선국 단속 업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7-210호(2018. 1. 18.), 제2019-13-211호(2019. 7. 8.) 참조]

○ 무선국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지된 무선설비로 어선이 항행하는 경우 「전파법」 제84조 제1호에 따른 벌칙이 적용되고

- 전파관리소는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23호 및 제6조 제20호 가목에 따라 「전파법」 중 무선설비에 관한 범죄 등을 단속하는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 전파관리소가 무선국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지된 무선설비로 항행하는 어선을 단속하는 것은 「전파법」 및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함

2) 전파관리소가 해경으로부터 본 건 어선 출입항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서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01-06호(2017. 1. 9.) 결정 참조]

○ 「전파법」 제84조 제1호는 “ 제19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처벌하고 있는바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무선국을 ‘운용’한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데
- 「어선법」이나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출항·조업하는 어선은 반드시 무선설비를 갖추고 일정 시간 간격으로 위치를 알리도록 하고 있는 등 무선설비의 설치·사용이 필수로 되어 있으므로 전파관리소는 어선의 출입항 정보를 통해 해당 어선의 무선국 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전파관리소가 해경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본 건 어선 출입항 정보는

해경이 수집하는 모든 어선의 출입항 정보로서, 전파관리소는 이를 시스템 연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받고자 하는바

- 전파관리소가 불법무선국 운용 단속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어선의 출입항 정보이고,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폐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파관리소는 무선국이 허가 취소·폐지된 어선의 어선번호를 해경에 제공하고 해경으로부터 해당 어선의 출입항 정보만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불법무선국 운용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 전파관리소가 항포구를 출입하는 모든 어선의 출입항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 본 건 어선 출입항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전파관리소는 해경의 어선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어선의 출입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나, 단순히 행정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3) 소결론

- 전파관리소가 본 건 어선 출입항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불법무선국 운용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파관리소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해경으로부터 본 건 어선 출입항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

다. 검토 결과

- 전파관리소는 불법무선국을 운용한 자를 단속하기 위하여 해경으로부터 단속 대상인 어선의 범위를 초과하는 본 건 어선 출입항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7호에 근거하여 제공받을 수 없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17-032호
안 건 명 창원시의 상수도 계량기 검침을 위한
전입 신고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신 청 인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장
의결연월일 2024. 10. 23.

주 문

창원시는 수도검침원이 상수도 계량기 검침을 위해 3회 이상 방문 후 스티커형 메모지 등을 활용하여 부재중 방문 알림 및 연락 요청을 하였음에도 응답하지 않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연락하여 상수도 계량기 검침을 위한 방문 일정 협의 또는 누수 등에 관한 안내를 하기 위하여, 창원시 읍·면·동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해당 세대에 전입 신고한 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10월 23일

위 원 장 김 일 환

위 원 김 진 욱

위 원 김 진 환

[별지]

1. 질의배경

○ 창원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4조 및 제26조 제2호에 따라 직속기관(사업소)으로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를 설치하였는데,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지역별 각 급수센터)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상수도사업을 하고, 상수도사업소(장)는 시(장)의 명을 받아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급수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상수도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취·정수장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창원·마산·진해권역 급수에 관한 사항 등 소관사무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상수도 계량기 검침 업무를 수행함

○ 창원시는 매월 상수도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고지하고 있으며, 상수도 사용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도검침원으로 하여금 상수도 계량기를 방문·검침하도록 하고 있는데,

- 상수도 계량기가 수도사용자* 등이 사용,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경우에는 수도검침원이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 없이는 해당 건물 등에 출입할 수 없는바, 수도검침원은 검침 대상 건물 등 방문 당시 수도사용자 등이 부재중이면 2회 이상 재방문하고 재방문 시에도 부재중인 경우에는 스티커형 메모지 등을 활용하여 “상수도 계량기 검침을 위해 3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연락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메시지와 수도검침원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있음

* 상수도 계량기 등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2조 제5호)

** 본 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주택이나 상업시설(음식점 등)임. 아파트의 경우 주계량기가 1개 설치되어 있고 이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검침 가능하므로 문제되지 않음(세대별 계량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검침하여 요금을 분배함)

- 한편, 수도검침원의 부재중 방문 알림 및 연락 요청에 불구하고 미응답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상수도 계량기 검침을 하지 못하여 실제 상수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요금을 인정부과* 하고 있는데,

*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부과(「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3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2호)

- 이와 관련, 고의로 검침에 응하지 않아 실제 사용량에 비해 현저히 적은 상수도 요금이 부과되거나, 해당 건물 등에서 수도를 사용하였음이 사후적으로 확인 되면 과거 사용량까지 한꺼번에 고지하는 과정에서 누진제 적용으로 인해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됨

- 또한, 수도사용자 등의 미응답 상태가 지속되는 건물 등은 장기간 동안 빈 채로 방치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 경우 상수도 계량기 고장, 누수 등으로 인하여 창원시 및 수도사용자 등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창원시) 누수 지점에 따라 계량기 수리 비용 부담,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과실 없는 지하누수 등의 경우 수도요금 감면 등

(수도사용자 등) 누수 지점에 따라 계량기 수리 비용 부담,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누수 시 과도한 수도요금 납부, 건물 침수 등

- 한편, 창원시(읍·면·동)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로명주소 등 필요한 사항 안내 및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위하여 전입 신고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보유하고 있음

- 이에,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내 지역별 각 급수센터는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수집·보유하는 전입 신고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받아 상수도 계량기 검침을 위한 방문 일정을 협의하거나 누수 등에 관한 안내에 활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내 지역별 각 급수센터가 수도검침원이 상수도 계량기 검침을 위해 3회 이상 방문 후 스티커형 메모지 등을 활용하여 부재중 방문 알림 및 연락 요청을 하였음에도 응답하지 않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연락하여 상수도 계량기

검침을 위한 방문 일정 협의 또는 누수 등에 관한 안내를 하기 위하여,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해당 세대에 전입 신고한 자의 성명과 연락처(이하 통칭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본 건이 창원시 읍·면·동과 상수도사업소 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법인으로서, 그 소속·하부 행정기관(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되어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구)을 통틀어 하나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용인도시공사의 용인시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용인시차량등록사업소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용인시이고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수 없는바, 용인시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용인시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징수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당초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음(2022. 7. 13. 제2022-112-027호 결정)
- 그런데 창원시는 수도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자로서,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4조 및 제26조 제2호에 따라 창원시 직속기관으로 설치된 사업소이고,
 - 창원시 읍·면·동은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 및 제7조,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0조에 따라 창원시에 설치되었으므로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와 창원시 읍·면·동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수 없으며,

-
- 이에 따라, 본 건의 개인정보 처리는 창원시(읍·면·동)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 시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 안내 및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창원시(상수도사업소)의 상수도사업 운영과정에서 수도 계량기 검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한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 한편,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창원시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1)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창원시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수도법 제38조 등에 따라 마련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르면,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해당 급수설비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고(제20조 제1항),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수도요금은 매월 정례일에 수도계량기에 따라서 계량한 사용수량을 바탕으로 정함(제27조 내지 제32조)
- 따라서 상수도 계량기 검침은 상수도 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본 건에서 수도사용자 등에게 연락하여 방문 일정을 협의하거나 누수 등에 관한 안내를 하는 것은 상수도 계량기 검침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창원시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수도 계량기를 검침하지 아니하고는 상수도 사용량을 파악할 수 없고, 실제 사용량에 따른 정확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할 수도 없음
- 상수도 계량기를 검침하기 위해서는 수도검침원이 해당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등에 방문하여야 하나,
 - 상수도사업소는 수도사용자 등의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도검침원 등으로서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먼저 연락할 방법이 없고, 방문 시 부재중 이더라도 재차 방문하거나 부재중 방문 알림 및 연락 요청 메도를 남겨 수도 사용자 등이 자발적으로 연락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따라서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창원시가 상수도 계량기 검침 및 이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 해당하는 법률상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창원시가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수도사용자 등에게 연락함으로써 상수도 계량기 검침을 위한 방문 일정을 협의하거나 누수 등에 관한 안내를 할 경우,
 - 장기간 건물 등을 비웠거나 수도검침원의 부재중 방문 알림 및 연락 요청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한 수도사용자 등도 상수도 계량기 검침 또는 누수 등에 관한 안내를 받을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누진제 적용, 누수 등으로 인해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보주체의 이익이 됨
- 또한, 인정부과, 누수 등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은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에 따라 상수도 계량기 검침 등에 성실하게 협조한 선량한 수도사용자 등까지 피해를 볼 수 있음

-
- 나아가, 본 건의 상수도 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의 세외수입으로서
 - 만일 수도사용자 등이 상수도 요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창원시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서 수도법 제68조 제1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35조 등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요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는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함
 - 따라서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지는 아니하다고 판단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17-033호
안 건 명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자체감사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 청 인 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의결연월일 2024. 10. 23.

주 문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청사 등 시설 관리 목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CCTV로 촬영한 개인 영상정보를 자체감사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청도공영사업공사는 그 개인영상정보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자체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10월 23일

위 원 장 김 일 환

위 원 김 진 욱

위 원 김 진 환

[별지]

1. 질의배경

-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법률 제6조 및「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운영 조례」 등에 따라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출자*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임

*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운영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자본금을 청도군이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여 설립·운영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군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는 금액은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제한됨

-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청사 등 시설 관리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CCTV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청렴·반부패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소속 직원의 복무 상황, 특히 근무지 이탈,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그 밖의 근무 태만 행위 등에 관한 자체감사 시 객관적 증거자료로 사용하고자 함

- 다만,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청도공영사업공사정관 제28조 제3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총 정원이 55명으로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에 따른 공공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 본 건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청사 등 시설 관리 목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CCTV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자체감사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시설 관리를 위하여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자체감사에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한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 청도공영사업공사가 보호법상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제2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제3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제4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에 포함됨
- 그런데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제6조, 「청도군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조례」에 따라 경북 청도군에서 출자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므로,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자체감사가 청도공영사업공사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공감사법 제2조 제4호는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상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르면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법인’은 법 제2조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제외됨

- 청도공영사업공사의 경우,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운영 조례」 제7조 제1항 제7호, 청도공영사업공사정관 제28조 제3항 및 별표 2에서 그 정원을 총 55명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감사법에 따른 공공기관에는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의 책임 운영을 강화하고 국가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제·개정되었고(지방공기업법 제정·개정이유 참고),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등에서 근무기강, 성실한 직무 수행, 품위 유지 등 지방공기업 직원의 의무와 이에 관한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 제1항에서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감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 이에 따라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청도공영사업공사정관 제31조 제4항,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시행내규에서 감사로 하여금 관계 법령, 사규, 감독관청의 지시 등에 근거하여 공사 내부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청도공영사업공사는 비록 공공감사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아니나, 지방공기업법의 입법 목적·취지, 지방공기업법 및 공사 정관, 감사규정·시행내규 등에 따라 감사를 두고 이에 따라 내부통제를 수행하여 기관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지방공기업으로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소속 직원의 복무 상황, 근무 태만 등에 관한 자체감사는 청도공영사업공사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다.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소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등 참고)

○ 청도공영사업공사는 CCTV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를 소속 직원의 복무 상황, 근무 태만 등에 대한 자체감사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데

- 출근부, 업무용 컴퓨터 로그기록 등 본 건 개인영상정보 외의 다른 정보를 통하더라도 소속 직원의 복무 상황 등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정보는 해당 직원이 아닌 제3자가 허위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다른 정보만으로는 근무지 이탈 등 근무 태만 행위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증명하기에 불충분한바

- 본 건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는 것 외에는 자체감사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효과적인 다른 수단을 찾기 어려움

○ 따라서 본 건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청도공영사업공사가 그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는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침해가 부당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1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따라서 청도공영사업공사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려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을 적합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 특히,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자체감사의 목적, 이로 인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인영상정보 이용 가능 여부 및 구체적인 이용 범위 등에 관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18-034호
안 건 명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운영실태 점검 및 환수 업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 청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의결연월일 2024. 11. 4.

주 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운영실태 점검 및 부당 지급액 환수 업무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의 배우자인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 수당지급연월, 수당지급액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11월 4일

위 원 장 김 일 환

위 원 김 진 욱

위 원 김 진 환

[별지]

1. 질의배경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하 ‘각급 기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보수 규정에 따라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 이 중,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5항 각 호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그 기관에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 1.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5항 제4호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며, 내부 보수규정·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지침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가족수당 및 자녀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음

* 공단이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녀학비보조수당’과 동일한 개념임

○ 이에, 각급 기관은 배우자가 공단에 재직 중인 소속 공무원이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이중으로 지급받는지 점검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지급액을 환수하기 위해, 공단 측에 공무원 배우자를 둔 직원의 가족수당 및 자녀학자금 지급내역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함

○ 공단은 해당 직원의 개인정보를 각급 기관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공단에 재직 중인 직원)의 동의를 받아 제공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일부 각급 기관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주장함

* 공단이 각급 기관으로부터 자료 제공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공단은 해당 기관에 정보주체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줄 것을 재요청하고, 기관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를 제공함

- 이에, 공단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심의·의결을 통해 각급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

- 공단이 각급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운영 실태 점검 및 환수 업무를 위해 공단에 재직 중인 해당 공무원 배우자의 성명, 생년월일, 수당지급연월, 수당지급액(이하 ‘본 건 개인정보’)을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각급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 공단이 내부 보수규정,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지침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수당·자녀학자금 지급하기 위해 수집·이용한 본 건 개인정보를 각급 기관의 수당 지급 운영실태 점검 및 환수 업무를 위해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함

가. 각급 기관의 수당 지급 운영실태 점검 및 환수 업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7-210호(2018. 1. 18.), 제2019-13-211호(2019. 7. 8.)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배우자가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해야 하며
 -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도 상기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7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족수당의 지급·변상 등을 규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함
- 따라서 각급 기관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이하 ‘본 건 수당’) 지급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나. 각급 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등 참고)
- ‘가.’에서 검토한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본 건 개인정보는 공단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각급 기관이 본 건 개인정보를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지 않으면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 각급 기관이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배우자인 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여 회신하고자 하더라도, 공단 직원이 그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본 건 수당 지급 적절성 여부 및 환수업무 수행이 불가하여 공무원 관리·감독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등 소관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각급 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직접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지방공무원법」 제45조는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공무원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건 수당 수령을 위해 각급 기관에 제출하는 ‘부양가족신고서, 자녀

학비보조수당 신고서'에는 배우자가 공공기관 직원인 경우에는 수당의 중복 지급이 불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 특히, 부양가족신고서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및 연락처, 해당 기관에서의 가족수당 지급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및 그의 배우자는 수당 지급 운영실태 점검 및 환수 업무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

- 또한, 본 건 개인정보 제공은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국가 및 지방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공익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단이 각급 기관의 본 건 수당 부당 지급 여부 확인 및 환수를 위해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지는 아니하다고 판단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19-035호
안 건 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신 청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의결연월일 2024. 11. 13.

주 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자 정보 제공에 관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처리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의사 및 치과 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11월 13일

위 원 장 김 일 환

위 원 김 진 욱

위 원 김 진 환

[별지]

1. 질의배경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약사법」 제23조의2 및 「의료법」 제18조의2에 따른 의약품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 의사 및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이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처방하려는 의약품이 동일한 성분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운영 등 마약류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마약류 통합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제11조1항 및 제2항),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하는 단계에서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자에 해당하는지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안내하기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자’(이하 ‘본 건 정보주체’)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의약품 처방 단계에서 의사 및 치과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위에 심의·의결 요청하였고,
 - 개인정보위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식약처는 의사 및 치과의사에게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의결함(2023. 11. 22. 개인정보위 제2023-114-032호 결정)

-
- 상기 의결례와 관련하여, 심평원은 식약처로부터 제공받은 본 건 개인정보를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위하여 의사 및 치과의사에게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심평원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약처로부터 제공받은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위하여 의사 및 치과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본 건 개인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민감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보호법 제23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별한 규정으로 제15조·제17조 및 제18조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본 건 개인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하고 있고,
 - ‘건강에 관한 정보’란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病歷), 신체적·정신적 장애(장애등급 유무 등)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바(「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158쪽 참조)

-
- 의료용 마약류는 주로 신체적 고통이 극심한 질병 등에 처방된다는 점, 오·남용되는 경우 정신건강에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사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상자의 과거 및 현재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건 개인정보는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함(2023. 11. 22. 개인정보위 제2023-114-032호 결정 참조)

나. 심평원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위하여 의사 및 치과의사에게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심평원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으나, 본 건 개인정보는 가.에서 검토했듯이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고유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므로, 보호법 제23조와 제24조의2에 따라 심평원이 민감정보와 주민등록 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법령에서 개인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란 법령에서 개인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 한편, 심평원이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사 및 치과 의사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근거인 「의료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를 살펴보면,
 - 의사 및 치과의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처방하려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인지 여부’, ‘병용금지 등으로 고시한 성분인지 여부’, ‘회수 또는 폐기 등

처방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등으로 처방하려는 의약품과 관련한 내용이며 본 건 개인정보인 처방하려는 환자가 오·남용 우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포함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됨

- 따라서 심평원은 「의료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등을 근거로 본 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으나, 식약처로부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본 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의사 및 치과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19-036호
안 건 명 지방자치단체의 재난피해자 유족 및 가족 지원을 위한
경찰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 청 인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2024. 11. 13.

주 문

시·도 및 시·군·구는 재난피해자의 유족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로부터 재난 피해자 유족 및 가족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11월 13일

위 원 장 김 일 환

위 원 김 진 욱

위 원 김 진 환

[별지]

1. 질의배경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고(제4조)
 - 각 시·도 및 시·군·구는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를 두고 있음(제16조)
- 지역대책본부는 「재해구호법」 등에 따라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임시주거시설, 공공요금, 심리상담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이하 ‘재난피해자’)의 유족과 가족 대상으로 장례지원, 법률상담, 구호금, 재난심리회복 등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재난피해자의 유족 및 가족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 지원을 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행정안전부는 각 시·도 및 시·군·구가 재난피해자 유족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로부터 재난피해자 유족 및 가족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시·도 및 시·군·구가 재난피해자 유족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경찰로부터 재난피해자 유족 및 가족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시·도 및 시·군·구가 재난피해자 유족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경찰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경찰이 「경찰수사규칙」 등에 따라 변사자를 인도하거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실종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시·도 및 시·군·구가 재난피해자 유족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시·도 및 시·군·구의 본 건 정보주체 지원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해구호법」은 이재민의 구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시·도 및 시·군·구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기관에 해당함(제2조 제3호)
- 이때, ‘이재민’이란 재난안전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며(제2조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안전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이 포함됨(제1조의2 제1호)

○ 또한, 「재해구호법」은 임시주거시설 제공, 장사(葬事)의 지원, 의료 서비스 제공, 심리회복의 지원 등 구호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고(제4조), 구호기관인 시·도 및 시·군·구는 ‘임시주거시설 제공’, ‘심리회복 지원’ 등 구호에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매년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제5조),

-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면 전체 재해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전이거나 재해가 진행 중일 때라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응급구호를 하고, 그 재해의 상황과 재해구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제7조)하여야 하는 등 구호와 관련된 조치를 하여야 함

○ 따라서 구호기관인 시·도 및 시·군·구가 재난피해자 유족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임시주거시설, 장사(葬事), 의료 서비스, 심리회복 등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할 것임

2)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위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 시·도 및 시·군·구가 본 건 정보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는 항목 중 장례지원처럼 시기를 놓치면 아예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 및 지원안내가 필요한데,

- 시·도 및 시·군·구가 본 건 개인정보 제공 없이 피해자 유족 및 가족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유족 및 가족이 직접 지역대책본부를 방문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대면으로 재난현장에서 지역주민에게 문의하는 방법뿐인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대규모 재난일수록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유족 및 가족을 파악하기 어려움

○ 또한, 급박한 재난 현장에서 경찰에 이어 시·도 및 시·군·구가 다시 유족 및 가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등 다수의 기관이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경우 혼란이 발생하여 도리어 재난 수습이 어려워질 수 있음

○ 따라서 시·도 및 시·군·구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衡量하여 판단하여야 함(개인정보위 2018. 11. 12. 제2018-23-268호 결정 참조)

○ 본 건 개인정보는 시·도 및 시·군·구가 유족 및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이며,

- 시·도 및 시·군·구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재난피해자 유족 및 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신속하게 안내하여 정보주체에게 필요한 사항을 제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한 것임

○ 또한, 본 건 개인정보 제공을 통한 유족 및 가족 지원으로 전체적인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국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등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본 건 개인정보 제공으로 제한되는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20-037호
안 건 명 인천광역시의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 청 인 인천광역시장
의결연월일 2024. 11. 27.

주 문

인천광역시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체납 지방세 징수 목적으로 상습 또는 고액의 지방세 체납자의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에 관한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11월 27일

위 원 장 김 일 환

위 원 김 진 욱

위 원 김 진 환

[별지]

1. 질의배경

- 인천광역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등에 따라 납세 고지를 한 조세채권이 그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독촉을 하고 그 독촉기한까지 이행이 없을 때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충당 등 일련의 단계적 처분을 진행하고 있음
- 관련하여, 지방세 고액채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요청한데 대해, 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적법성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이에 인천광역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체납자의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인천광역시가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공단으로부터 체납자의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에 관한 정보(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지방세 기본법」 제130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를 근거로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 공단이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징수 등과 관련하여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인천광역시에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며,
 -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 이하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6조 제4호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및 해당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

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의 의미

- 원칙적으로 규율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법률 이외의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법률에 일반적·추상적 규정을 두고, 구체적 내용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경우 해당 하위 법령에 따른 규정도 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개인정보,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의 구체적 항목 등 명백히 개인정보를 규율해야 하며,
 - 해당 법률 규정의 구체적 맥락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규정도 포함됨

나.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제2항·제3항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제2항 및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요청을 받은 해당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해당 법률 규정은 제공요청 대상 자료에 개인정보나 개인정보의 구체적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 과세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4조와 해당 조항에 따른 별표3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자료 등이 규정되어 있어 과세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 된다고 인정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다고 판단됨

○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 3은 과세자료제출 기관으로 공단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제2항·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단 등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협조 요청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3-101-002호, 2023.1.11., 제2019-23-370, 2019.12.9. 등

다. 「지방세징수법」 제36조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세징수법」 제36조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 등(제4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서류 등의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관계법의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은 체납자의 재산 소재 또는 수량과 관련되므로 개인정보가 포함된다고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 세무공무원의 서류 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제108조 취지를 고려할 때,
- 「지방세징수법」 제36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규정으로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함

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상 해당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와 그러한 침해행위가 부당한지를 고려해야 함(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2020.12.) 95p)

○ 체납자에 대한 징수는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 따른 국민의 납세의무와 「지방세기본법」 제18조에 따른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신의·성실의무 이행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조세 정의 실현과 납세자의 형평성 확보 등 공익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 정보주체인 체납자는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주의 사망, 행방불명 등의 경우에는 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납자의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직접 반환할 수 있으나,

- 동 사안의 경우, 사업주의 사망 등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에 따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
- 동시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은 없음

○ 결론적으로 인천광역시가 상습 또는 고액의 지방세 체납자의 고용·산재보험료 환급정보를 공단에 요구하고,

- 요청받은 공단이 해당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

마. 인천광역시의 체납자 개인정보 처리 관련

○ 인천광역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에 관한 정보를 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과정에서

-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처리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공단에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 주민등록번호는 보호법 제24조의2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처리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20-038호
안 건 명 경찰청의 발달장애인 사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민감정보 등 처리에 관한 건
신 청 인 경찰청장
의결연월일 2024. 11. 27.

주 문

1. 경찰청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법절차에서의 편의제공 및 권리 보장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피의자·피해자·참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정보주체의 발달장애인 등록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다만, 이 경우 사법절차에서의 편의제공 및 권리 보장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피의자·피해자·참고인에 대한 조사·심문 초기 단계에 발달장애인이 사법 지원을 받을 절차상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실제 문답을 통해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심문 전에 일률적으로 모든 사건관계인에 대해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발달장애인 등록 여부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사법절차에서의 편의제공 및 권리 보장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11월 27일

위 원 장 김 일 환

위 원 김 진 욱

위 원 김 진 환

[별지]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며
 - 수사기관은 발달장애인을 조사·심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제12조·제13조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여야 하고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 조사·심문하여야 함
 - 그밖에 「형사소송법」, 「장애인복지법」 등에서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제59조 참조)
- 이에 따라 경찰청은 2023년에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마련하여 경찰관이 장애인을 상대로 조사할 때에는 장애 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실시하도록 하고,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어·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 진술을 조력하도록 하며,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뢰관계인을 조사에 동석시킬 수 있음을 고지하고 지정된 발달장애인 조사 전담경찰관이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장애인에 대한 사법절차에서의 편의 제공 및 권리 보장(이하 ‘사법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피의자나 피해자·참고인(이하 ‘사건관계인’)이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발달장애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당사자가 스스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는 등의 경우에는 외부로 나타나는 모습이나 행태만으로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워

-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사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장애인 차별 또는 인권침해의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경찰수사의 신뢰 저하와 수사의 추진 동력에 지장을 주는 등의 문제를 가져오고 있음
- 이에 경찰청은 형사사법정보포털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모든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심문 전에 사건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발달장애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나. 질의내용

- 경찰청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8조 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1조에 따라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심문 전에 모든 사건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정보주체의 발달장애인 등록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은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23조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24조의2가 각각 적용되는바
- 발달장애인이라는 정보는 보호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의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 처리할 수 있으며

-
- 주민등록번호는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1호) 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에 처리할 수 있음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1조는 ‘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하에서는 경찰청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업무가 범죄 수사 업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각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함

가. 경찰청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업무가 ‘범죄 수사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나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심문은 수사에 해당하고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수사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수사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심문 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발달장애인법 제12조·제13조 등에 따라 사건관계인이 발달장애인임이 확인된 경우 사법절차상 편의를 제공하고 신뢰관계인 동석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므로

-
- 사법경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심문하는 과정에서 사법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의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서 범죄 수사 업무에 해당함

나. 경찰청이 발달장애인 등록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사건 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한지 여부

○ 경찰청은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등록 여부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아 그에 필요한 사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청이 발달장애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정보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여야 하므로

- 이하에서는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등록 여부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를 전제로, 이를 위해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사건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한지에 대하여 검토함

○ 경찰청은 발달장애인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정보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로서 보유하고 있는 사건관계인의 인적정보 중 성명·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나, 주소·휴대전화번호는 변경가능성이 있고

- 보건복지부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등록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수의 약 5.1%에 이르며, 이 중 발달장애인의 수는 약 9.2%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고려할 때

- 성명·생년월일 등으로 정보주체를 특정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발달장애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특정 개인의 발달장애인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고, 경찰청이 사건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다. 경찰청이 조사·심문 전에 모든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등록 여부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지 여부

○ 발달장애인의 유형에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 있는데, 지적장애의 경우 지적능력·사회기술·핵심 일상활동 등에서 결함을 보이고 유전적 요인에 의한 때에는 다운증후군과 같은 신체적 징후가 나타나기도 하며, 자폐의 경우에는 공감능력 결여·의사소통의 어려움·반복적 행동을 보이는 특징이 있음

–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모두 진단기준에 있어 소통능력과 사회성 결여를 공통으로 하나, 중하지 않은 경우 신체적 징후가 없을 수도 있어 겉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알아보기 어렵고

– 사법경찰관이 사건관계인에게 ‘신뢰관계인의 동석,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에 의한 조사·심문’ 등 필요한 사법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이를 직접 수집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므로

•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달장애인 등록 여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를 제공받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7조에서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 발달장애인법은 제3조에서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보호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12조 제3항·제4항)
 - 사법경찰관은 조사·심문 시에 발달장애인 등의 사법절차상 권리를 미리 고지하여 사건관계인이 발달장애인인 경우 스스로 사법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 경찰청이 조사·심문 전에 일률적으로 발달장애인 등록 정보를 제공받아 확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점에서 장애인 차별의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은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을 위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제1호는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사법경찰관은 장애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심문 시에 질문 등을 통하여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조력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미리 안내하는 등의 사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고,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음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심문 시 사건관계인이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발달장애인 등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심문 전에 일률적으로 모든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사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장애 여부의 확인 및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내용에 대한 고지’를 사법기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 경찰청은 2023년 ‘수사인권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심문 시 사법경찰관은 사법지원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고 문답 등을 통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사·심문 시 매뉴얼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는 외에 반드시 발달장애인 등록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경찰청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심문 초기 단계에 발달장애인이 사법지원을 받을 절차상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실제 문답을 통해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심문 전에 일률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 등록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반면에, 사법지원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고 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사건관계인이나 보호자 등이 발달장애인임을 밝히지 않고 스스로는 의사소통에 문제없음을 주장하나

- 조사·심문 과정에서 사건관계인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 발달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을 이행해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발달장애인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여 발달장애인 등록 정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라. 검토 결과

- 경찰청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8조 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제71조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정보주체의 발달장애인 등록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사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심문 초기 단계에 발달장애인이 사법지원을 받을 절차상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실제 문답을 통해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심문 전에 일률적으로 모든 사건관계인에 대해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발달장애인 등록 여부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사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121-039호
안 건 명 광복회의 회원 복지·교육 등을 위한 국가보훈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 청 인 광복회장
의결연월일 2024. 12. 11.

주 문

광복회는 광복회원의 복지·교육 업무와 대의원 선거에 필요한 선거인(회원) 명부 비치 업무를 위하여 국가보훈부로부터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보훈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12월 11일

위 원 장 김 일 환

위 원 김 진 욱

위 원 김 진 환

[별지]

1. 질의배경

- 광복회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보훈단체 중 하나임
- 광복회는 국가유공자단체법에 의거하여 마련된 「광복회 정관」(이하 ‘정관’) 제4조에 따라 복지·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 광복회는 회원자격이 있는 선순위 유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선순위 유족들에게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어려움
- 또한, 정관 제15조 제1항 및 「광복회 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회원) 명부 비치 업무의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 선순위 유족 정보가 필요함
- 이에, 광복회는 국가보훈부가 등록·관리하는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정보를 제공받아 광복회원의 복지·교육 업무와 대의원 선거에 필요한 선거인(회원) 명부 비치 업무를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광복회가 회원의 복지·교육 업무와 대의원 선거에 필요한 선거인(회원) 명부 비치 업무를 위하여 국가보훈부로부터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보훈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광복회가 회원 복지·교육 업무와 선거인(회원) 명부 비치 업무를 위하여 국가보훈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조,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러한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제3조) 보훈급여금과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교육·취업·생업·의료지원 등 예우를 위한 보훈혜택(제10조 내지 제26조의2)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독립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며,
 - 독립유공자법 제39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과 변동신고, 보훈급여금과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등 보훈혜택 지원업무를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 지방세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즉,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훈대상자 등록 및 결정 업무와 이들에 대한 보훈급여금과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 교육지원, 취업지원, 생업지원, 의료지원 등 독립유공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훈혜택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 불가피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광복회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려는 목적은 광복회 정관에 따라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복지·교육 사업 및 광복회의 대의원 선출을 위한 회원(선거인) 명부 비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이는 회원들의 상부상조와 자활 능력 지원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광복회의 고유 업무로서, 독립유공자법 등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수행하는 보훈혜택 지원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나. 광복회가 회원 복지·교육 업무 수행 및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회원) 명부 비치를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가보훈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1) ‘광복회의 회원 복지·교육 업무 수행 및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회원) 명부 비치 업무’가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업무’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여야 하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개인정보위 2023. 7. 26. 제2023-112-027호 결정 참조)

-
- 광복회의 회원 복지·교육 업무가 ‘법률상 소관 업무’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법과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관련 법률에서 광복회의 복지·교육 업무 수행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가 등의 업무를 광복회가 수행하도록 위임·위탁하고 있지 않으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광복회 정관의 업무는 법률에 따른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 아울러, 국가유공자단체법 제16조에 따른 회원 명부 비치 규정은 현재 가입된 회원에 관한 규정으로서, 현재 회원이 아닌 자에 대한 본 건 개인정보의 처리는 법률상 소관 업무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광복회의 회원 복지·교육 업무 및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회원) 명부 비치 업무를 법률상 소관 업무로 볼 수 없음

**【 참고사항 】 2012년 ~ 2023년
심의 · 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 목차**



2012년 ~ 2023년 심의·의결안건 모음집 목차

목 차

* ()는 법 제8조 제1항(위원회 기능)의 각 호임

2012년도

[제2회 '12. 1. 30.] '12년도~'14년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안) (1호의2)	3
[제2회 '12. 1. 30.]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 건 (4호)	9
[제6회 '12. 4. 9.]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 (2호)	11
[제8회 '12. 5. 14.] 경기도의 시·군 CCTV 영상정보 연계를 위한 심의요청 건 (5호)	12
[제9회 '12. 5. 29.] 병무청의 병역 관련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심의요청 건 (5호)	13
[제10회 '12. 6. 11.] 주식회사 구글(Google Inc.)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선 의견 (2호)	14
[제17회 '12. 10. 2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회수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요청 건 (5호)	25
[제18회 '12. 11. 12.] 관악구 CCTV 영상정보 제공 관련 법령해석 요청 건 (4호)	26
[제18회 '12. 11. 12.]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도의 해석 및 운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의결 (2호)	28
[제19회 '12. 11. 26.] 중·고등학교 전자학생증 발급관련 개선권고 (2호)	36
[제19회 '12. 11. 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규정 관련 개선 의견 (2호)	42
[제21회 '12. 12. 24.] 교통영상정보 외부기관 연계·송출의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여부 질의 건 (2호) ..	47

2013년도

[제2회 '13. 1. 28.] 학생 개인정보(동영상) 수집·제공 관련 법령해석 (4호)	53
[제2회 '13. 1. 28.] 「지하철 전동차내 CCTV 운영」 관련 의견 표명 (2호)	57
[제4회 '13. 3. 11.] 인천광역시의 체납자 과태료 징수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요청 건 (5호)	63
[제4회 '13. 3. 11.] 중·고등학교 전자학생증 발급에 대한 정책 청원관련 개선권고 (2호)	64
[제5회 '13. 3. 25.] 공익근무요원의 민감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건 (5호)	66
[제9회 '13. 5. 27.] CCTV를 이용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관한 법령해석 (4호)	68

[제9회 '13. 5. 27.]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촬영 영상자료 공개」 관련 법령해석 (4호)	70
[제11회 '13. 6. 24.] 연구대상 환자의 건강정보 및 의무기록 제공요청에 대한 심의·의결 요청 건 (5호) ...	73
[제12회 '13. 7. 8.]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양식 수정요청에 대한 심의·의결 요청 건 (2호)	75
[제12회 '13. 7. 8.] 스마트폰으로부터 처리(전송)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건 (2호) ...	81
[제13회 '13. 7. 22.] 축산물위생관리법(전자창구 및 전자기록부 운영)에 대한 심의·의결 요청 건 (4호) ...	86
[제14회 '13. 8. 12.] 「2013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심의 요청 건 (10호)	88
[제15회 '13. 8. 26.]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항목에 대한 개선의 건 (2호)	89
[제18회 '13. 10. 14.] 유치원 입학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 과다 수집 개선 (2호)	92
[제19회 '13. 10. 28.]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심의·의결 건 (5호) ...	94
[제19회 '13. 10. 28.]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해석 요청 건 (4호)	97
[제21회 '13. 11. 18.] 국군재정관리단의 처리정보의 이용 심의 요청 건 (5호)	99
[제21회 '13. 11. 18.] 특성화고 등 졸업생 취업통계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가능 여부 심의·의결 건 (5호) ...	102

2014년도

[제1회 '14. 1. 13.] 폐업 국제결혼중개업소 이용자 신상정보 보존 관련 질의 건 (4호)	107
[제1회 '14. 1. 13.]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관련 개선 권고 (2호)	110
[제1회 '14. 1. 13.] 금융지주회사등의 고객정보 제공·이용 관련 제도개선 (2호)	112
[제4회 '14. 2. 24.] '국악연감 2013' 발간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심의·의결 건 (5호)	116
[제6회 '14. 3. 24.] 환경부의 개인정보에 대한 질의 건 (4호)	119
[제7회 '14. 4. 14.] 국립중앙도서관 개인정보 제공 심의 요청 건 (5호)	121
[제8회 '14. 4. 28.] 2015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안) 의결 건 (1호의2)	124
[제8회 '14. 4. 28.]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의 사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2호)	131
[제9회 '14. 5. 12.]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및 제18조 관련 해석의 건 (4호)	134

[제10회 '14. 5. 2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근로자 응시원서 접수시 개인정보 수집 개선 (2호)	143
[제11회 '14. 6. 9.] 건강보험증 송달 관련 민원처리의 건 (4호)	148
[제12회 '14. 6. 23.] 송파구의 자동차 체납세 등 징수를 위한 공영주차장 입·출차 차량번호 및 입·출차 시간 제공 관련 심의요청 건 (4호)	151
[제13회 '14. 7. 14.]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를 위한 지방세 고지서 서식 개선 권고 (2호)	154
[제14회 '14. 7. 28.]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건 (5호)	157
[제15회 '14. 7. 30.]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관련 진정 건 (2호)	160
[제16회 '14. 8. 11.] 「2014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 건 (10호)	165
[제17회 '14. 8. 25.]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관리 개선의 건 (2호)	166
[제18회 '14. 9. 15.] 의무교육대상자 취학독려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제공 가능 여부 질의의 건 (4호) ..	168
[제19회 '14. 9. 29.] CCTV관제센터 영상의 경찰서 상황실과 실시간 연동관계 가능 여부 질의의 건 (4호) ..	171
[제19회 '14. 9. 29.] 교통정보수집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제공 관련 심의 요청 건 (4호)	173
[제20회 '14. 10. 13.] 국무총리 공관 정문 주변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영상 제공 관련 심의 요청 건 (5호) ..	175
[제20회 '14. 10. 13.] 공공기관에 대한 어선정보 제공 관련 심의·의결 요청 건 (5호)	177
[제20회 '14. 10. 1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중 일부개정건의 건 (기타)	180
[제21회 '14. 10. 27.] 육군 제1288부대의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 산불감시용 CCTV 영상정보 공유에 대한 심의·의결 요청 건 (4호)	184
[제22회 '14. 11. 10.] 직불금 부당수령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관련 심의·의결 건 (5호)	187
[제24회 '14. 12. 8.] 특성화고 등 졸업생의 취업통계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가능 여부 심의 요청 건 (4호)	191
[제25회 '14. 12. 22.] 개인정보 파기 관련 법령해석 요청 건 (4호)	194
[제25회 '14. 12. 22.]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등의 관계기관 제공 관련 건 (4호)	198
[제25회 '14. 12. 22.]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관련 법령조항들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7호)	201
[제25회 '14. 12. 22.] 「과학기술기초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호 서식]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7호) ...	205
[제25회 '14. 12. 2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5호 [별지 제5호 서식]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7호)	207

[제25회 '14. 12. 2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의2 제11호, 제14호 및 제15호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7호)	209
[제25회 '14. 12.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2항 [별표 5]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7호)	211
[제25회 '14. 12. 22.]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제3호, 제8호, 제11호, 제13호 내지 제15호 서식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7호)	213
[제25회 '14. 12. 2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7호)	215
[제25회 '14. 12. 2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별지 제11호 서식]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7호)	217
[제25회 '14. 12. 22.] 「건전가정의례준칙」 제7조 제2항 [별표 2]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7호) ..	219
[제25회 '14. 12. 2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호 [별지 제10호 서식]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7호)	221

2015년도

[제1회 '15. 1. 12.] 공공기관 등의 공개채용 관련 개인정보 과다 수집 개선의 건 (2호)	225
[제1회 '15. 1. 1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별지 제4호 서식]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7호)	229
[제1회 '15. 1. 12.] 조사·분석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기타)	231
[제2회 '15. 1. 26.]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우편으로 송부되는 과태료 고지서 등의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에 관한 건 (2호)	233
[제2회 '15. 1. 2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의2 서식], 제2항 [별지 제2호 서식], 제6조 [별지 제8호 서식], 제8조 제1항 [별지 제9호 서식]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7호)	236
[제3회 '15. 2. 9.] 신용카드 변칙거래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심의·의결 건 (5호)	239
[제4회 '15. 2. 23.] 서울특별시의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관련 질의 건 (4호)	243

[제4회 '15. 2. 23.] 「기술사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7호)	246
[제5회 '15. 3.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7호)	249
[제5회 '15. 3. 9.] 공익사업의 토지 등 보상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여부 심의·의결 건 (5호)	255
[제6회 '15. 3. 23.] 장학금 관련 법령 등의 개인정보 수집 개선의 건 (2호)	259
[제7회 '15. 4. 13.]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의 해병대 제1사단 제공 관련 질의 건 (4호)	276
[제8회 '15. 4. 27.] 2016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의결 건 (1호의2)	278
[제8회 '15. 4. 27.] 서울특별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공개에 관한 건 (8호)	287
[제9회 '15. 5. 1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제공 제도의 운용 개선 (2호)	290
[제9회 '15. 5. 11.] 조사·분석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기타)	292
[제10회 '15. 6. 8.] 안양시 교통·방법 영상정보의 경찰서·소방서·군부대 제공 관련 질의 건 (4호) ...	294
[제10회 '15. 6. 8.] 경찰청의 웨어러블 카메라 사용의 개인정보보호법령상 가능 여부 질의 건 (4호) ..	298
[제10회 '15. 6. 8.] 경찰청의 인사 관련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질의 건 (4호)	301
[제11회 '15. 6. 22.] 청주시 영상정보의 방송·신문사 제공 관련 질의 건 (4호)	304
[제12회 '15. 7. 13.] 종로구 영상정보의 국회 제공 관련 질의 건 (5호)	307
[제12회 '15. 7. 13.] 철도차량 운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관련 심의·의결 건 (4호)	309
[제13회 '15. 8. 10.] 국가유공상이자의 개인정보 제공 관련 심의·의결 건 (4호)	313
[제13회 '15. 8. 10.] 행정자치부의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심의·의결 건 (9호)	317
[제13회 '15. 8. 10.] 「2015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 건 (10호)	319
[제14회 '15. 8. 24.] 포항시 교통영상정보의 도로교통공단 제공 관련 질의 건 (4호)	320
[제14회 '15. 8. 24.] 상주시 굴착공사 장소에 관한 정보의 주식회사 영남에너지서비스 제공 관련 질의 건 (4호)	322
[제15회 '15. 9. 14.]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교통사고 영상정보의 손해보험사 제공 관련 질의 건 (4호) ...	324
[제16회 '15. 10. 12.] 시각장애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결과 제공 관련 질의 건 (5호)	328
[제17회 '15. 10. 26.] 경찰청의 거래대상 휴대폰/계좌번호 인터넷 사기 피해신고 여부 확인 서비스 제공 관련 질의 건 (5호)	332
[제18회 '15. 11. 9.]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무원 개인정보 제공 관련 심의·의결 건 (5호)	335

[제18회 '15. 11. 9.] 육군 제6755부대의 대구·경북지역 통합관제센터 및 경찰 상황실 영상정보 제공에 대한 질의 건 (4호)	338
[제19회 '15. 11. 23.] 충주시 교통, 방범 영상의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제공 관련 질의 건 (4호)	342
[제20회 '15. 12. 14.]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요청 건(1차) (7호)	346
[제21회 '15. 12. 28.] 금융사기 피해방지 서비스 도입을 위한 유권해석 건 (4호)	349
[제21회 '15. 12. 28.]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의 인천광역시 관내 영상 관련 질의 건 (4호)	353
[제21회 '15. 12. 28.]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요청 건(2차) (7호)	355

2016년도

[제1회 '16. 1. 11.] 쓰레기 무단투기 영상 제공 관련 질의 건 (4호)	361
[제1회 '16. 1. 11.]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요청 건(3차) (7호)	366
[제2회 '16. 1. 25.]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요청 건(4차) (7호)	371
[제2회 '16. 1. 25.] 대구광역시 남구청 영상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 (4호)	376
[제2회 '16. 1. 25.] 대구광역시 북구청 영상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 (4호)	379
[제2회 '16. 1. 25.] 행정자치부의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심의·의결 건 (9호)	382
[제3회 '16. 2. 22.]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요청 건(5차) (7호)	385
[제4회 '16. 3. 14.] 통일부의 이산가족 찾기 신청인 개인정보 처리 질의 건 (4호)	389
[제4회 '16. 3. 14.]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 관련 심의·의결 건 (4호)	393
[제4회 '16. 3. 14.] 육군 제7516부대의 경주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에 대한 질의 건 (4호) ..	396
[제4회 '16. 3. 14.]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요청 건(6차) (7호)	399
[제5회 '16. 3. 28.]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요청 건(7차) (7호)	405
[제6회 '16. 4. 11.] 충청남도의 도청 소속 공무원 인사이력 도의회 제출 관련 질의 건 (5호)	408
[제7회 '16. 4. 25.] 2017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의결 건 (1의2호)	410
[제7회 '16. 4. 25.] 평화방송의 개인정보 이용 관련 심의·의결 건 (4호)	420
[제8회 '16. 5. 9.] 피내사자의 개인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 (4호)	422

[제8회 '16. 5. 9.] 조사분석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기타)	425
[제10회 '16. 6. 13.] 지방공무원 배우자의 개인정보 처리 질의 건 (5호)	427
[제11회 '16. 6. 27.] 시각장애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결과 제공 관련 추가 질의 건 (5호)	430
[제12회 '16. 7. 11.]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자체감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제공 관련 질의 건 (4호) ..	433
[제13회 '16. 8. 8.] 「2016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 건 (10호)	438
[제15회 '16. 9. 12.] 고양시의 영상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 (4호)	439
[제15회 '16. 9. 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중 일부개정령의 건 (기타)	442
[제15회 '16. 9. 12.] 법령평가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기타)	444
[제16회 '16. 9. 26.] 보호관찰소 모의훈련 시 CCTV 영상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 (4호)	446
[제16회 '16. 9. 26.]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질의 건 (4호)	449
[제17회 '16. 10. 10.] 국가공무원 배우자의 개인정보 처리 질의 건 (5호)	453
[제17회 '16. 10. 10.]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개인정보 제공 질의 건 (5호)	457
[제18회 '16. 10. 24.] 행정자치부의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심의·의결 건 (9호)	460
[제20회 '16. 11. 14.]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과적차량 단속정보 관련 질의 건 (4호)	463
[제20회 '16. 11. 14.]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영상 수집·이용 관련 질의 건 (4호)	465
[제21회 '16. 11. 28.]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건 (4호)	468
[제23회 '16. 12. 26.] 「제3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2018~2020년)」 (1호의2)	471

2017년도

[제1회 '17. 1. 9.]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5호) ·	509
[제1회 '17. 1. 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2호)	513
[제2회 '17. 1. 23.] 국제표준이름식별기호(ISNI) 관련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4호) ···	530
[제2회 '17. 1. 2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2호)	533
[제2회 '17. 1. 23.] 조사분석전문위원회 기능·명칭 변경 및 위원 추가위촉 (기타)	535
[제3회 '17. 2. 13.]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범칙금 납부 여부 관련 질의에 관한 건 (4호)	538

[제7회 '17. 3. 27.] 시설(차량)대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건 (4호)	540
[제8회 '17. 4. 10.]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2호)	544
[제8회 '17. 4. 10.]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2호) ..	547
[제8회 '17. 4. 10.] 「국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2호)	550
[제9회 '17. 4. 24.] 2018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의결 건 (1호의2)	552
[제9회 '17. 4. 24.] 행정자치부의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9호)	562
[제9회 '17. 4.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2호)	565
[제10회 '17. 5. 8.]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기타)	585
[제11회 '17. 5. 22.]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기타)	587
[제12회 '17. 5. 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2호)	589
[제13회 '17. 6. 1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5호)	600
[제14회 '17. 6. 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중 일부개정에 관한 건 (기타)	603
[제14회 '17. 6. 2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2호)	605
[제14회 '17. 6. 26.] 광주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 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의 감사목적 제공에 관한 건 (4호)	615
[제15회 '17. 7. 10.] 부산광역시 남구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시민 봉사단 운영에 관한 건 (4호)	619
[제15회 '17. 7. 10.]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업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5호)	623
[제15회 '17. 7. 10.] 서울특별시(한양도성도감)와 중구의 영상정보 공유에 관한 건 (4호)	626
[제15회 '17. 7. 10.]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처리 후 공고에 대한 권고 및 제도개선 (2호)	629
[제16회 '17. 7. 24.]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위한 치매질환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4호)	634
[제17회 '17. 8. 14.]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 건 (10호)	637
[제18회 '17. 8. 28.] 강원랜드의 카지노 출입제한을 위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관한 건 (4호)	638
[제19회 '17. 9. 1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관련 의견 요청에 관한 건 (2호)	642
[제19회 '17. 9.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2호) ..	652
[제19회 '17. 9.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2호)	657
[제20회 '17. 9. 25.]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기타)	664
[제20회 '17. 9. 25.] 외교부의 재외국민등록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4호)	666

[제21회 '17. 10. 16.]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의 군부대 제공에 관한 건 (4호)	670
[제21회 '17. 10. 16.] 자동차 공제조합의 전손사고 자동차 정보 제공에 관한 건 (4호)	676
[제22회 '17. 10. 18.] 국토교통부의 적재중량 초과 차량 정보 제공에 관한 건 (5호)	682
[제23회 '17. 10. 3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건 (5호)	685
[제23회 '17. 10. 30.]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기타)	689
[제25회 '17. 11. 13.]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은 보훈급여금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5호)	691
[제25회 '17. 11. 13.] EU 부분적정성 평가 전환 추진 개선에 관한 건 (2호)	695
[제26회 '17. 11. 27.]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관련 통계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4호)	702
[제26회 '17. 11. 27.] 「약사법 시행령」 개선권고에 관한 건 (2호)	708
[제27회 '17. 12. 11.] 교통량 분석 통계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4호)	709
[제27회 '17. 12. 11.] 과세특례제도 운영을 위한 해외이주 신고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4호)	712

2018년도

[제1회 '18. 1. 8.]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5호)	1
[제1회 '18. 1. 8.]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9호)	4
[제1회 '18. 1. 8.] 법령평가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기타)	7
[제2회 '18. 1. 22.]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기타)	9
[제2회 '18. 1. 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에 관한 건 (2호)	11
[제2회 '18. 1.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에 관한 건 (2호)	30
[제4회 '18. 2. 12.]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공개 및 제공에 관한 건 (4호)	36
[제6회 '18. 3. 12.]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선권고에 관한 건 (2호)	40
[제7회 '18. 3. 26.]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권자 발굴 및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5호)	42
[제8회 '18. 4. 9.]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현수막 불법 설치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4호)	49

[제8회 '18. 4. 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2312) 의견 조회에 관한 건 (2호)	54
[제8회 '18. 4. 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2289) 의견 조회에 관한 건 (2호)	78
[제8회 '18. 4. 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2423) 의견 조회에 관한 건 (2호)	84
[제10회 '18. 4. 23.] 2019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의결 건 (1호의2)	88
[제10회 '18. 4.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에 관한 건 (2호)	96
[제10회 '18. 4. 2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에 관한 건 (2호)	108
[제11회 '18. 5.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쓰레기 불법 투기자 신원 확인을 위한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4호)	112
[제11회 '18. 5. 14.]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기타)	117
[제11회 '18. 5. 14.] 법령평가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기타)	119
[제11회 '18. 5. 14.] 예금보험기금 회수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4호)	121
[제13회 '18. 6. 11.] 법령평가 전문위원회 확대개편 및 위원위촉 동의 (기타)	126
[제14회 '18. 6. 25.]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기타)	128
[제14회 '18. 6. 25.]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행정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9호)	130
[제15회 '18. 7. 9.] 법무부의 난민 자녀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5호) ...	136
[제15회 '18. 7. 9.]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 초등학교 취학 안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건 (5호)	140
[제15회 '18. 7. 9.] 경찰청 차적자료의 다른 수사기관 제공에 관한 건 (4호)	144
[제16회 '18. 7. 23.]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4호)	148
[제16회 '18. 7. 23.]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선권고에 관한 건 (2호)	152
[제17회 '18. 8. 13.] 2018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 건 (10호)	154
[제17회 '18. 8. 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4181) 의견 조회에 관한 건 (2호)	155
[제17회 '18. 8. 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4281) 의견 조회에 관한 건 (2호)	158

[제18회 '18. 8. 27.] 독거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국전력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5호)	161
[제18회 '18. 8. 27.]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실적공개를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4호)	164
[제19회 '18. 9. 10.] 고용노동부의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4호)	168
[제19회 '18. 9. 10.] 인천광역시의 수도요금 할인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5호)	172
[제19회 '18. 9. 1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4988)의견 조회에 관한 건 (2호)	177
[제20회 '18. 10. 1.] 시·군 영상정보의 광역자치단체 연계에 관한 건 (4호)	181
[제20회 '18. 10. 1.]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기타)	186
[제20회 '18. 10. 1.]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기타)	188
[제20회 '18. 10. 1.] 퇴직공제제도 고지업무를 위한 행정안전부, 대법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5호)	190
[제20회 '18. 10. 1.]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행정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9호)	196
[제20회 '18. 10. 1.] 한국조폐공사의 국회 안전심의를 위한 직원정보 제공에 관한 건 (4호)	199
[제20회 '18. 10. 1.] 국적 취득·상실자 정보의 관보 공개에 대한 개선에 관한 건 (2호)	204
[제21회 '18. 10. 15.] 울산광역시의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이용·제공 요청에 관한 건 (4호)	209
[제21회 '18. 10. 15.] 경기도 광명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 업무의 광명경찰서 위탁에 관한 건 (4호)	212
[제22회 '18. 10. 29.] 병무청의 병역의무자 병적관리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5호)	215
[제22회 '18. 10. 29.] 정읍경찰서의 회사 종업원 고객 개인정보 이용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건 (4호) ...	220
[제22회 '18. 10. 29.] 아산경찰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아산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4호)	224
[제22회 '18. 10. 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5478) 의견 조회에 관한 건 (2호)	228
[제22회 '18. 10. 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5647) 의견 조회에 관한 건 (2호)	232
[제23회 '18. 11. 12.] 제주시의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 요청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5호)	238

[제23회 '18. 11. 12.] 연금·보험급여 업무를 위한 경찰청의 교통사고 정보 제공에 관한 건 (4호)	241
[제24회 '18. 11. 26.] 한국마사회의 직원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건 (4호)	248
[제24회 '18. 11. 26.] 경기도 연천군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군부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4호)	252
[제24회 '18. 11. 26.] 포천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위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유 외국인등록정보 제공에 관한 건 (5호)	256
[제24회 '18. 11. 26.] 육군본부의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위한 국가보훈처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5호)	260
[제25회 '18. 12. 10.]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채권회수를 위한 세무서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4호)	263
[제25회 '18. 12. 10.] 관세청의 총포류 불법반입 차단을 위한 경찰청 보유 총포류 소지허가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5호)	268
[제25회 '18. 12. 10.] 유실물을 찾기 위한 충청남도 청양군 보유 개인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4호) ..	271
[제25회 '18. 12. 10.] 경기도 구리시의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제도 안내를 위한 구리농수산물공사 보유 차량번호 제공에 관한 건 (5호)	274
[제26회 '18. 12. 24.] 의정부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추가를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4호) ..	277

2019년도

[제1회 '19. 1. 14.] 행정안전부의 승강기 사고조사 등을 위한 승강기 관리주체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4호)	1
[제1회 '19. 1. 14.] 동두천시와 연천군의 차량 방법용 CCTV 공유에 관한 건 (4호)	7
[제1회 '19. 1. 14.] 대구지방경찰청의 순찰차 카메라를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4호)	10
[제1회 '19. 1. 14.] 양구군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를 위한 렌터카업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4호)	14
[제2회 '19. 1. 28.] 한국도로공사의 차량영상 인식기술 향상을 위한 비정상 처리 차량번호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5호)	18

[제2회 '19. 1. 28.] 경찰청의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4호)	23
[제3회 '19. 2. 11.] 중앙행정기관의 제품 사고조사를 위한 한국소비자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4호)	28
[제3회 '19. 2. 11.] 경기북부시설단의 채권관리사무를 위한 외교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5호)	33
[제3회 '19. 2. 11.]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행정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9호)	37
[제3회 '19. 2. 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7934) 의견 조회에 관한 건 (2호)	40
[제3회 '19. 2. 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7562) 의견 조회에 관한 건 (2호)	46
[제3회 '19. 2. 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6720) 의견 조회에 관한 건 (2호)	56
[제4회 '19. 2. 25.] 보령시의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4호)	60
[제4회 '19. 2. 25.] 국토교통부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관리업무를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4호)	63
[제4회 '19. 2. 25.] 충청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복지지원정보 안내를 위한 충청남도 내 시·군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4호)	68
[제4회 '19. 2. 25.] 파주시의회 의정활동을 위한 파주시 보유 직원연락망앱 제공에 관한 건 (5호)	71
[제4회 '19. 2. 25.]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천안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5호)	74
[제5회 '19. 3. 11.]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보유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4호)	78
[제5회 '19. 3. 11.] 부동산 경매정보 제공업체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4호)	83
[제5회 '19. 3. 11.] 의정부시의 불법튜닝 자동차 원상복구 명령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5호)	89
[제5회 '19. 3. 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8562) 의견 조회에 관한 건 (2호)	92
[제6회 '19. 3. 25.] 공법보훈단체의 회원관리 등 업무를 위한 국가보훈처 보유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4호)	96
[제6회 '19. 3. 25.] 동두천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추가를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4호)	102
[제6회 '19. 3. 25.] 법령 서식에 관한 개인정보 최소처리 기준 (2호)	105
[제7회 '19. 4. 8.] 군포시 보건소의 치매예방 업무 안내를 위한 군포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5호)	122

[제7회 '19. 4. 8.] 용인도시공사의 자체감사를 위한 CCTV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5호)	125
[제7회 '19. 4. 8.] 전라남도의 자체감사를 위한 동부지역본부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5호)	128
[제7회 '19. 4. 8.]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징수를 위한 오산시차량등록사업소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5호)	131
[제7회 '19. 4. 8.]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징수를 위한 군포시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5호)	134
[제8회 '19. 4. 22.] 2020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의결 건 (1호의2)	137
[제8회 '19. 4. 22.] 법원 경매개시결정문 중 당사자 표시의 보호법 위반여부 (2호)	145
[제9회 '19. 5. 13.]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인사자료 제공에 관한 건 (5호)	152
[제9회 '19. 5. 13.]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4호)	155
[제9회 '19. 5. 13.] CJ헬로 전북방송의 재난방송을 위한 임실군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5호)	158
[제9회 '19. 5. 13.]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4호) ..	163
[제9회 '19. 5. 13.] 국토교통부 보유 자동차속성정보 제공을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4호)	168
[제9회 '19. 5. 13.] 교육청의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5호)	171
[제9회 '19. 5. 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9362) 의견 조화에 관한 건 (2호)	174
[제9회 '19. 5. 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9415) 의견 조화에 관한 건 (2호)	177
[제10회 '19. 5. 27.] 평택시의 「찾아가는 생활민원SOS 서비스」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5호)	182
[제10회 '19. 5. 27.] 태아초음파 동영상 관련 ○○법원 사실조화에 관한 건 (4호)	185
[제10회 '19. 5. 27.]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을 위한 차량등록사업소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5호)	191
[제10회 '19. 5. 27.] 성북구 보건소의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확인을 위한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4호)	194
[제10회 '19. 5. 27.]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경산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4호)	199

[제10회 '19. 5. 2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8103) 의견 조화에 관한 건 (2호) ……	203
[제11회 '19. 6. 10.] 국회 국정감사 등을 위한 인사혁신처 보유 순직공무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4호) ……	207
[제11회 '19. 6. 10.] 고양시의 관외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위한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4호) ……	212
[제11회 '19. 6. 10.]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의 좌석안전띠 착용 금지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4호) ……	218
[제11회 '19. 6. 10.] 서울보증보험(주)의 대출보증을 위한 국토교통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4호) ……	221
[제12회 '19. 6. 24.]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행정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9호) ……	225
[제12회 '19. 6. 24.] 부산광역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추가를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4호) ……	228
[제13회 '19. 7. 8.]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5호) ……	231
[제13회 '19. 7. 8.] 경찰공무원의 고소를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석 건 (4호) ……	235
[제14회 '19. 7. 22.] 지역책임부대의 통합방위사태 대응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통합관계센터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4호) ……	239
[제14회 '19. 7. 22.] 은평구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요구 거절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4호) ……	245
[제15회 '19. 8. 12.]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 건 (10호) ……	249
[제15회 '19. 8. 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978) 의견 조화에 관한 건 (2호) ……	250
[제16회 '19. 8. 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건 (기타) ……	255
[제16회 '19. 8. 26.] 공주시 보건소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공주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5호) ……	257
[제16회 '19. 8. 26.]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사후관리를 위한 법무부 보유 거주지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4호) ……	262
[제17회 '19. 9. 9.] 광주광역시 동구의 주·정차 관련 민원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5호) ……	265
[제17회 '19. 9. 9.] 국회 국정감사 등을 위한 소방청 보유 119신고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4호) ……	269
[제17회 '19. 9. 9.] 경찰청의 외국인 보호조치를 위한 법무부 보유 신원확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4호) ……	273

[제17회 '19. 9. 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1668) 의견 조회에 관한 건 (2호) ……	277
[제18회 '19. 9. 23.] 지역아동센터 개인정보 보호 개선에 관한 건 (2호) ……	280
[제18회 '19. 9. 23.] 김포시의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5호) ……	288
[제18회 '19. 9. 23.]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복지지원정보 안내를 위한 울산시 관내 구·군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4호) ……	292
[제18회 '19. 9. 23.] 자동차등록번호 제공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4호) ……	295
[제19회 '19. 10. 14.] ○○○항공의 항공기 관리업무를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4호) ……	300
[제19회 '19. 10. 14.] 경상남도의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군 보유 CCTV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4호) ……	304
[제21회 '19. 10. 28.] 경기도의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위한 은행 등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5호) ……	310
[제21회 '19. 10. 28.] 서울특별시의 유급병가지원 사업 안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5호) ……	313
[제21회 '19. 10. 28.] 달성군 읍·면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달성군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4호) ……	317
[제21회 '19. 10. 28.] 한국도평방지위원회의 스테로이드 구매 선수 제재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5호) ……	320
[제21회 '19. 10. 28.] 경찰청의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치매질환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4호) ……	323
[제22회 '19. 11. 11.] 인천 용진군의 정주생활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인천항만공사 보유 화물선 이용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5호) ……	327
[제22회 '19. 11. 11.] 남해군의 이장 행정지원 업무 등을 위한 토지대장 발급·배부에 관한 건 (5호) ……	330
[제22회 '19. 11. 11.] 부천시의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촉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4호) ……	334
[제22회 '19. 11. 1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정활동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4호) ……	337
[제22회 '19. 11. 11.] 경찰관의 개인정보 사적 이용행위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4호) ……	340
[제22회 '19. 11. 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2890) 의견 조회에 관한 건 (2호) ……	345
[제23회 '19. 11. 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건 (기타) ……	348

[제23회 '19. 11. 25.]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4호)	352
[제24회 '19. 12. 9.] 세종특별자치시의 자동차세 등 체납 징수업무를 위한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4호)	356
[제24회 '19. 12. 9.] ○○지방국세청의 국세징수업무를 위한 ○○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5호)	362
[제24회 '19. 12. 9.] 한국도로공사의 터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4호)	365
[제25회 '19. 12. 23.]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조치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5호)	367
[제25회 '19. 12. 2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위한 건설근로자공제회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5호)	371

2020년도

보호위 출범 전

[제1회 '20. 1. 13.]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데이터 등 제공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3
[제1회 '20. 1. 13.] 광주시의 재난관리 업무를 위한 CCTV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9
[제1회 '20. 1. 13.] 한국도평방지위원회의 스테로이드 구매 선수 제재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유 개인정보 제공 관련 변경 질의에 관한 건	12
[제1회 '20. 1. 13.] 시흥경찰서의 순찰업무를 위해 드론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건	15
[제3회 '20. 2. 10.] 삼척시의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19
[제3회 '20. 2. 10.] 한국도로공사의 적재중량 초과 차량정보 처리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22
[제4회 '20. 2. 24.]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25
[제4회 '20. 2. 24.] 경찰청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31
[제5회 '20. 3. 9.] 경륜·경정사업자의 승자투표권 구매 제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34

[제6회 '20. 3. 23.] 소방청의 119구급활동을 위한 의료기관 등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39
[제7회 '20. 4. 13.] 경기도의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위한 은행 등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44
[제7회 '20. 4. 13.]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47
[제8회 '20. 4. 27.]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정활동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보유 산하단체 임원 채용자료 제공에 관한 건	52
[제8회 '20. 4. 27.]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출연연구기관 간 협동연구와 행정업무 협업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56
[제8회 '20. 4. 27.] 법무부의 전자장치 피부착자 위치추적 업무수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구·군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60
[제9회 '20. 5. 11.] 지방자치단체의 보훈혜택 지원 업무를 위한 국가보훈처 보유 국가보훈대상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65
[제10회 '20. 5. 25.]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감사를 위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69
[제10회 '20. 5. 2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영상정보 열람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건	72
[제10회 '20. 5. 25.] 국토교통부의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단속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운행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76
[제10회 '20. 5. 25.] 경찰청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건	81
[제10회 '20. 5. 25.] 지역책임부대의 경계태세 발령이전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84
[제11회 '20. 6. 8.] 김포시 통진읍의 장애 정도 재판정 업무를 위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보유 출입국기록 제공에 관한 건	88
[제11회 '20. 6. 8.] 농협경제지주의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91
[제11회 '20. 6. 8.] 광명시의 광명동굴 이용자 안전을 위한 광명도시공사 보유 CCTV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94
[제11회 '20. 6. 8.] 성동구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요구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97

[제11회 '20. 6. 8.]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공공안전서비스 구축을 위한 블랙박스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100
[제12회 '20. 6. 22.] 인천광역시의 취약계층 연료비 지원사업을 위한 관내 구·군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05
[제12회 '20. 6. 22.] 강남구의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108
[제12회 '20. 6. 22.]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복지지원정보 안내를 위한 관내 시·군·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11
[제13회 '20. 7. 13.]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체감사를 위한 소속 직원의 운전경력증명서 수집에 관한 건	114
[제13회 '20. 7. 13.] 근로복지공단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관련 업무를 위한 행정안전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18
[제13회 '20. 7. 13.] 경상북도 소방본부의 피난약자 구조·구급업무를 위한 도내 시·군 보유 장애인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24
[제13회 '20. 7. 13.] 복무기관의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 등을 위한 지방병무청 보유 민감정보 제공에 관한 건	128

보호위 출범 후

[제1회 '20. 8. 26.]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범죄사건 수사를 위한 블랙박스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139
[제1회 '20. 8. 26.] 대구지방경찰청의 드론을 이용한 영상정보 수집에 관한 건	143
[제2회 '20. 9. 9.] 화성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한 화성시 보유 퇴직공무원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147
[제2회 '20. 9. 9.]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전자고지를 위한 행정안전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51
[제2회 '20. 9. 9.] 경찰청 및 소방청의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을 위한 광명시 보유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155
[제3회 '20. 9. 23.]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행제한 위반 차량 운전자 가중 과태료 부과를 위한 개인정보 공유에 관한 건	158
[제3회 '20. 9. 23.] 서울시설공단의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전자고지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161

[제3회 '20. 9. 23.]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미납 주차요금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166
[제3회 '20. 9. 23.] 경찰청의 차량적재 제한 위반 단속을 위한 국토교통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170
[제4회 '20. 10. 14.] 병무청의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제도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173
[제4회 '20. 10. 14.] 부산해양경찰서의 업무 수행을 위한 남항관리사업소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77
[제4회 '20. 10. 14.] 원주시의 웨어러블 카메라를 사용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건	182
[제5회 '20. 10. 28.] 성동구의 영상정보 처리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185
[제6회 '20. 11. 18.] 출입국관리소의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189
[제7회 '20. 11. 25.] 인천관광공사의 출입인증시스템 운영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192
[제8회 '20. 12. 16.]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195
[제8회 '20. 12. 16.]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대상자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200

2021년도

[제1회 '21. 1. 13.] 강원도 내 시·군 및 유관기관의 재난방송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3
[제1회 '21. 1. 13.] 금융회사 등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업무 금융결제원 위탁에 관한 건	7
[제2회 '21. 1. 27.]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외국인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건	
[제2회 '21. 1. 27.] 남산도서관의 체온 카메라 및 신분증 자동 인식기 설치·운영에 대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18
[제2회 '21. 1. 27.] 평창군의 쓰레기 무단투기자 단속을 위한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21
[제3회 '21. 2. 24.]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등을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5
[제3회 '21. 2. 24.] 구리시의 방치차량 확인을 위한 주차단속 또는 방법 목적 CCTV 영상정보의 이용에 관한 건	30

[제4회 '21. 3. 10.] 금융회사의 신분증 진위확인 정보 공유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건	34
[제4회 '21. 3. 10.]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대상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40
[제5회 '21. 3. 24.] 국방부의 불법도박 예방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군장병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44
[제5회 '21. 3. 24.] 국세청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업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53
[제6회 '21. 4. 14.] 시흥시의 자체감사를 위한 CCTV 영상정보의 이용에 관한 건	61
[제7회 '21. 4. 28.] 김포시 CCTV 연계 구축사업을 위한 김포도시관리공사 보유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66
[제8회 '21. 5. 12.] 창원시의회의 토지보상 내역 제출 요구에 대한 창원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70
[제8회 '21. 5. 12.] 부산광역시시회의 행정사무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부산광역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75
[제8회 '21. 5. 1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가정 내 아이돌보미 활동확인용 CCTV 설치를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80
[제9회 '21. 5. 26.] 부산광역시경찰청의 이동형 IP카메라 사용을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85
[제9회 '21. 5. 26.] 방송통신위원회의 외국자본 출자·출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위한 (주)○○○ 보유 외국인 주주 정보 제공에 관한 건	90
[제10회 '21. 6. 9.]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의 피난약자 구조 업무를 위한 자치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96
[제11회 '21. 6. 23.] 지방자치단체의 맹견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를 위한 보험회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02
[제12회 '21. 7. 14.]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를 위한 서울교통공사 보유 교통카드번호 제공요청에 관한 건	106
[제12회 '21. 7. 14.]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토지보상 업무를 위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12
[제12회 '21. 7. 1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사기관 내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117
[제13회 '21. 7. 28.]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업무를 위한 국립대학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23
[제13회 '21. 7. 28.] 소방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보급을 위한 시·군·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28

[제15회 '21. 8. 25.] 경찰청의 사이버 사기 피해신고 이력 제공에 관한 건	134
[제16회 '21. 9. 8.] 충주시 장년층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38
[제16회 '21. 9. 8.] 모바일앱 광고 가입자 확인을 위한 서울교통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143
[제18회 '21. 9. 29.]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업무 관리 등을 위한 직원 가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148
[제18회 '21. 9. 29.] 법무부의 특정경제사범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행정안전부·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대법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60
[제19회 '21. 10. 13.] 고용노동부 축사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168
[제19회 '21. 10. 13.] 병원의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 전파의 차단 등을 위한 방문자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건	174
[제19회 '21. 10. 13.] 한국어촌어항공단의 귀어귀촌 실태조사를 위한 해양수산부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183
[제19회 '21. 10. 13.]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따른 시·군·구의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188
[제20회 '21. 10. 21.]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정기조사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192
[제21회 '21. 10. 27.]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를 위한 경기도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95
[제22회 '21. 11. 10.] 구리시의 이동소음원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200
[제22회 '21. 11. 10.]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204
[제22회 '21. 11. 10.]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의 미납 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207
[제23회 '21. 11. 24.] 서울특별시의 유급병가지원 사업안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관한 건	212
[제23회 '21. 11. 24.]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명령 점검·확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17

[제23회 '21. 11. 24.]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25
[제24회 '21. 12. 10.] 질병관리청 등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31
[제24회 '21. 12. 10.] 시흥시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점검을 위한 택시운송사업자 보유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관한 건	243
[제25회 '21. 12. 2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질병관리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48
[제25회 '21. 12. 22.] 통일부의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56

2022년도

[제1회 '22. 1. 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을 위한 한국방송공사 보유 프리랜서 방송작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3
[제1회 '22. 2. 9.] 인천성모병원의 의식불명 환자 상태설명 등을 위한 부평구 보유 가족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9
[제2회 '22. 1. 26.] 인천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전자감독 업무를 위한 인천광역시 군·구 등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15
[제2회 '22. 1. 26.]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요청 업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3
[제3회 '22. 2. 9.] 질병관리청의 피폭관리 업무를 위한 국립암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통계청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31
[제3회 '22. 2. 9.] 평택초등학교의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의사 확인을 위한 평택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41
[제3회 '22. 2. 9.] 고양시의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46
[제4회 '22. 2. 23.] 연천군의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 비용부담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51

[제5회 '22. 3. 23.] 서울본부세관의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한 IP카메라 설치·운영 관련 법령해석 건	55
[제5회 '22. 3. 23.] 검찰의 국가배상관련 구상권 청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건	63
[제5회 '22. 3. 23.] 서울특별시의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위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70
[제6회 '22. 4. 13.] 해양경찰청의 조난구조 업무 수행을 위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76
[제6회 '22. 4. 13.] 경찰청의 대테러, 방첩관련 정보활동 수행을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84
[제7회 '22. 4. 27.] 감사원의 타 기관 감사를 위한 대한항공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91
[제7회 '22. 4. 27.]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를 위한 보험개발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95
[제8회 '22. 5. 11.]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신규대상자 발굴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01
[제9회 '22. 5. 25.] 수사기관의 실종자 수색,수사를 위한 서울교통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110
[제9회 '22. 5. 2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제재부가금 징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118
[제10회 '22. 7. 13.] 경찰청의 범죄 수사 업무 수행을 위한 가상자산 지갑주소거래소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25
[제10회 '22. 6. 8.]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요청 업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33
[제11회 '22. 6. 22.] 포천도시공사의 관광지 시설사용료 면제를 위한 포천시 보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142
[제11회 '22. 6. 22.]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약제비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관한 건	148
[제12회 '22. 7. 13.] 용인도시공사의 용인시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용인시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156
[제13회 '22. 9. 8.]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범죄수사를 위한 대전광역시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61
[제13회 '22. 8. 10.] 부동산 등기 지연 안내를 위한 수원시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168

[제14회 '22. 9. 8.]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장려금 자격상실 및 환수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73
[제14회 '22. 9. 8.] 서울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건	178
[제15회 '22. 9. 14.] 울산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울산시 구·군 보유 영상정보 제공요청에 관한 건	185
[제15회 '22. 9. 14.] 대구광역시 빈곤아동 실태조사를 위한 대구시 구·군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90
[제16회 '22. 9. 28.]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195
[제16회 '22. 9. 28.]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개인정보처리자 여부 법령해석에 관한 건	201
[제17회 '22. 10. 19.]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익직불 지급대상 자격확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7
[제17회 '22. 10. 19.] 세브란스병원의 환자 전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13
[제17회 '22. 11. 30.] 부산광역시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환급신청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220
[제17회 '22. 10. 19.] 국회사무처의 감사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225
[제18회 '22. 11. 16.] 대구광역시 취약계층 주거실태 조사를 위한 대구시 구·군 등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31
[제18회 '22. 11. 16.]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해수 방류 차량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237
[제18회 '22. 11. 16.] □□의 개인회원간 중개거래 명세 제공을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241
[제19회 '22. 11. 30.] 외교부의 재외국민 등록말소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246
[제20회 '22. 12. 19.]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건	250
[제20회 '22. 12. 19.] 경주시의 폐기물 투기차량 단속을 위한 한국환경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63
[제20회 '22. 12. 19.] □□□□□□□□의 자체감사를 위한 민간업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70

2023년도

[제1회 '23. 1. 11.]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3
[제1회 '23. 1. 11.] 서울특별시 중구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 등 영치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8
[제2회 '23. 2. 8.] 병무청의 병무사범 예방 및 단속을 위한 한국철도공사와주식회사 에스알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14
[제2회 '23. 2. 8.] 전라북도 소방본부의 소재불명 이동탱크저장소 검사를위한 한국도로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9
[제3회 '23. 2. 22.] 예비군부대의 예비군 편성 및 신상변동 관리를 위한지방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4
[제3회 '23. 2. 22.] 예비군부대의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보류 자격 확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31
[제4회 '23. 3.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업무수행을 위한 영상정보 수집에 관한 건	37
[제4회 '23. 3. 8.]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출연연구기관 간 협동연구 및 행정 업무 협업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43
[제5회 '23. 3. 22.] 한국환경공단의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지방자치단체 보유 물사용량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건	51
[제6회 '23. 4. 12.] 지자체단체의 한부모가족 종합지원서비스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59
[제6회 '23. 4. 1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명예퇴직 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65
[제6회 '23. 4. 12.] 금천구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한 금천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71
[제7회 '23. 4. 26.] 장애인 코로나 19 감염 양상과 진단결과 분석 연구를 위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제공 관련 건	77
[제7회 '23. 4. 26.]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 신규대상자 발굴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85

[제7회 '23. 4. 26.] 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의 혼잡사고 방지를 위한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95
[제8회 '23. 5. 24.] 수원시의 전세임차인 보호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105
[제8회 '23. 5. 24.] 창원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창원시 산하기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13
[제9회 '23. 6. 1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화재감지 비상경보등 설치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124
[제9회 '23. 6. 14.] 지방세환급금 환급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133
[제9회 '23. 6. 14.] 국가보훈부의 참전유공자 유족 보훈혜택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138
[제10회 '23. 7. 12.] 국민권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및 보호조치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46
[제12회 '23. 7. 26.]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업무를 위한 질병관리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54
[제12회 '23. 7. 26.]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농지관리기금 용자금 검사업무 수행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161
[제12회 '23. 7. 26.]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노인 목욕이용권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171
[제13회 '23. 8. 3.] 관세청의 마약밀수 감시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77
[제14회 '23. 10. 11.] 민자도로사업자의 재난관리 업무를 위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189
[제15회 '23. 10. 25.]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가구 발굴 업무를 위한 AI서비스 이용 관련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197
[제16회 '23. 11. 8.] 해군의 어선 조업 보호 및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3
[제16회 '23. 11. 8.] 부안중학교의 분실된 졸업대장 정비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10

[제18회 '23. 11. 8.]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안내를 위한 행정안전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16
[제17회 '23. 11. 22.]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25
[제18회 '23. 12. 13.] 해양수산부의 해기사 면허 발급을 위한 해양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30
[제18회 '23. 12. 13.] 악성 앱 설치자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35
[제18회 '23. 12. 13.] 세무서의 세무조사 업무를 위한 (주)○○○○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42
[제18회 '23. 12. 13.]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주차장 신·증설을 위한 공항주차장 이용객의 차량번호 제공에 관한 건	248
[제19회 '23. 12. 27.] 국토교통부의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255

2024년 법령해석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

발 행 : 2025년 3월

발행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사총괄담당관
